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위반(대법원판례 위주로 공부)

- 수권(위임)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건
범죄(구제+예측可), 형벌(통류, 상한, 폭)
- 마산시위발포 교사의 미수를 **예비로 처벌한다**
- 시행령에서 **총포 부품** 소지까지 처벌한다
- 시행령에서 입금**청산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
-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현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현재)
-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현재)

법률주의 합치(현재판결)

- 정부관리기업체(현재법률들은 정의규정을 신설)
- 간판의 규격, 유사석유제품 등

명확성원칙 위반

- **가정**의례의 참뜻(가정의례에관한법률)
- 만화-**잔인성** 조장 우려(미성년자보호법)
- **도박등** 선량풍속, 사회질서 반함(외국환관리법)
- 현저히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집시법)

명확성원칙 합치

- **음란**(명확○), cf **저속**(명확×)
- **종교문란**영업행위(**청소년**보호법)
- **종속영업**자의 **청소년**출입금지(풍속영업법)

유형의 문화적 소산, 도로의 구부러진 곳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간여', 통념상 '식용'
유사석유제품, 거래와 관련 없는 지급,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 대체가능한 '소량'
'어구의 선적,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뇌물죄에서 공사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
정보통신법의 '불안감',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
등등 다수 판례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 형법상 **보호관찰**-판례(소급○)
- cf 가장폭력범상 사회봉사명령(보안처분)- 소급×
- 소송법: [원칙]소급○ [예외] 공소시효가 문제
부진정소급입법-**원칙**(소급○), 예외(소급×)
진정소급입법-**원칙**(소급×), **예외**(소급○)
- 대법 전합 **판례변경**: 통설-판례×
- 父의 재물절취후 **인지**-소급○(친족상도래○)
- 이혼소송취하로 **간통**고소 취소간주-소급○
- 형법에 대한 현재의 **위헌**결정-소급○
(구 형법 위반행위는 무죄판결○, 면소판결×)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결정-소급○
- cf 외국인인 귀화하여 한국국적취득-소급×
- (과거 외국인으로서의 행위에 우리 형법 적용×)

유추해석금지원칙 합치

- 유리한 사유를 유추적용 ⇒ 허용
-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 ⇒ 허용
- 자기소유 건조물 또는 **자기·타인**소유 물건
- 음란한 부호의 '전시'에 '**핑크**'를 포함해석
- 후보배우자와 선거사무원간 **기부**행위 인정
- 자동차이용을 위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
- 관세범상 **징벌적** 추징을 외국환관리법에도 인정
- 출생신고 전에는 **사실상친족**, 출생신고 후에는
법률상친족으로 해석(성폭력범상 친족강간죄)
- **미성년자의재강간** 미수를 규정이 없는데도 처벌
- **화상채형**서비스를 불건전 전하서비스로 해석
- 타인의 정보보호에 생존자와 **사망**자도 포함
-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을 이메일 내용을 누설
- 내국인이 한국 거주하다 북한 입국→탈출죄○
- 내국인이 제3국 거주하다 북한 입국→탈출죄○
- 외국인인 한국 거주하다 북한 입국→탈출죄○
- **외국인이 제3국** 거주하다 북한 입국→탈출죄×
- 청소년의 불벌 표시에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 ☐ 불리한 규정을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
- ☐ 유리한 규정을 제한해석하는 것도 금지
- **자수**를 범행발각 전 자수로 축소(공직선거법)

- **신체**장애에 정신장애를 포함(성폭력법)
- '**사실**상의 존속'에 의붓아버지 포함(성폭력법)
- '죄를 **범한** 자'에 미수를 포함(성폭력법)
- 군용물**분실**에 군용물편취를 포함(군형법)
- **성전열**수술자를 강간객체인 부녀로 해석(형법)
- 무기징역형을 **직방**감경하는 경우 경합범·누범가중하여 15년 넘는 징역형 선고(형법)
- 양의 개념에 **염소**를 포함(축산물가공처리법)
- **죽은**소쩍새를 천연기념물로 해석(문화재보호법)
- **사할**소유에 대표소유를 포함(전통사찰보전법)
- 공경증서원본에 공경증서**정본**을 포함
- 공문서변조에 납세자보관 **영수증**변조를 포함
- 외국**통용**지폐에 통용 오인가능 지폐를 포함
- 주민등록번호 **생성**·사용에 단순사용을 포함
-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에 수령의무 포함
- **지정**문화재관리에 가지정문화재관리를 포함
- 공직선거법 **분리**심리를 농협임원 선거에 유추
- 범인의 **양벌**규정을 비범인사단에 유추
- **경품**구매대장 미보관을 불법경품제공으로 처벌
- **진료부** 과대기재를 상세기록의무위반으로 처벌
- 도축세 **특별**징수위반을 원천징수위반으로 처벌
- **중개**수수료 약속만 했는데 불법중개로 처벌
-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주체에 준강도를 포함
- 집단행위금지한 공무원법을 **특수**경력자에 적용
- **뇌물**죄 공무원의제규정을 일반사안에도 적용
- 준강도(미수)도 **특수**강도강간 주체로 해석
- **단독**20호 또는 공동20세대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세대) 건설까지 처벌
- 농협**정관**의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처벌
- 환경규제대상인 **모페드**형에 경량오토바이 포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 ① 행위시법주의(구법적용)
 ② 범죄후 법률변경(불법·경한형): 신법
 ③ 재판확정후 법률변경(불법·×): 집행면제

- ☐ §1①행위시, §1②범죄후 = **실행행위 종료시**
- ☐ §1②실행종료후 불법이면 신법대로 **면소판결**
- ☐ §1③재판확정후 불법이면 신법대로 **집행면제**
- ☐ 포괄일죄 중간에 법률변경: §1①(신법적용)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무조건)

- ☐ 신법의 **부칙**에서 **구법**을 적용○(부칙의 효력)
- ☐ 판례-**사실관계변경**-§1①적용(구법적용)
 -법률이념변경-§1②적용(신법적용)
- ☐ 경중비교의 기준-① 법정형, ② 처단형
 선택형, 병과형 있으면 - **가장 중한 형** 기준
 경중 평가 후 - **가장 경한 형**의 법률 적용

ex 3년이하 징역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이하 벌금
 개정법률이 **시행**도 안되었으면 법률의 변경×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어도 경한 법률○
공소시효기간의 기준도 경한법률에 의함○

사실관계의 변경(§1① 적용, 구법 적용)

해외여행 기본경비증액, 무단반출 물품에 세울감경,
 무단산특조법(한시법), 부동산 중개보조원수 제한,
 한전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비상계엄해제,
 군사기밀누설후 평문으로 저하, 지정차로제도 폐지,
 신고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밀령머신, 유자차,
 해조류, 냉동감자, 유해화학물질 등
 식품첨가금지물을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허용
 외국수표의 휴대 이외 수입의 허가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의 허가제 폐지

범의범의 변경 (§12 적용, 신법 적용)

미제강동특주 판매허용, 무허가 **목탄**반출 허용
 지방의원 허위 **약력** 기재, 종교집회장(교회) 용도변경
개고기 검사해태불발, 서울 시내 **닭** 도살 허용
 부피계량기(비커)검정제 폐지, **공일**배치법 규제 폐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합** 직접 주는 행위를 허용
 각종 가중처벌 **금역** 변경,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cf **공사금역** 3천만원 미만 일괄하고금에 허용
cf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증액-사실관계 변경
cf 무단반출 물품에 대한 **세출**감경-사실관계 변경

- ① 협회미등록 법인 내부자거래 불벌(중권거래법)
- ② 폐차의 **원동기** 제사용(자동차관리법)
- ③ 재산명시절차의 불출석자 **감지**처분(민소법)
- ④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은 불벌(청소년보호법)
- ⑤ 사후경합범에 금고이상 요건 추가 (§12유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 속지주의 §3 속인주의 §4 기국주의
 §5 보호주의 : **내란·외환·국가·통화·유가**증권·
 우표인지·공문서·공인장
 §6 보호주의 : §5 이외 대한민국·국민
 행위지 법률로 범죄 성립 함
 §7 외국집행 : 다시 형선고 **可** (**임의적감정**)

- ① 속지: 뇌물수수행위, 히로뽕 밀수 **공모**
- cf** 캐나다 국적자가 국내 간첩중 대한항공으로
중국거처 북한입국 : 속지+기국
- ② 속인: **미국문화원** 점거, 필리핀 카지노
- ③ 보호: 페스카마호(제8조: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 cf** 한국의 사문서, 사인장 위조 - 형법 적용 x
- ④ 세계 : **중국민행기** 납치 후 한국에 착륙
- cf** 한국에 착륙 후 외국항공기에서 범죄-속지주의
통상 국내 거주 미군 군속에 한국법적용○
- ⑤ 베네주엘라 영역 집행후 - 한국 형선고 **可**
- ⑥ 한국에 통상 거주하는 미군 - 한국법 적용○

행위론

- 행위요건: ① **인간**의 ② **외부적** ③ **지배** 행위
 동물자연 x 생각의도 x 절대폭력 x

	인과(과동)	목적(고의)	사회(중요)
인식 있는 과실	●	×	○
고의 미수	×	●	○
부작위	×	×	○
한계기능	○	○	×

[해설] ○→설명용어, ×→설명관란
 한계기능 = 동물, 자연현상을 범치행위에서 제외

범죄체계론

	고전	신고전	목적	합일대
행	인과적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구			고의	고의
위	결반	결반	행반	결반+행반
책	심리	규범	순수규범	고의이중
	책임능력 고의 x x	책임능력 고의 x 기대가능성	책임능력 x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 책임고의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고의=사실인식+위법성인식		사실인식	사실인식	사실인식

- 고의위치: 구파(책임), 신파, 현대(구성/불법)
 □ 고의내용: 구파(사실인식+위법성인식)
 신파, 현대(사실인식)→위법성인식은 책임요소
 □ 범죄성립에 위법성인식 필요(학설일치)
 □ 위법성인식 위치: 구파(고의설), 신, 현(책임설)

법인의 범죄능력, 형법능력

- ①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부정**
법인의 **형법능력 긍정**(양벌규정때문)
(대법) 무과실+ 과실책임설, **(헌재) 과실책임설**
- ② 무과실책임 규정에 대한 현재의 위헌판결
⇒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의리기사등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 ③ 양벌규정: 중기소유자인 **법인**(신분자) 처벌○
+ **행위자**인 직원(비신분자) 처벌○
→ 법규범을 비신분자에게 확대 적용(판례)
- ④ 기관위임사무 -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
(ex. 지정항만순찰)
고유자치사무 - 지자체는 별도의 독립 공법인
(ex. 초과적재운행 ⇒ 양벌규정으로 처벌○)
- ⑤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때에도 영업주는 책임○
영업주가 교통사고 입원중이었어도 책임○
명칭상 약사 아닌, 실질적 영업약사가 책임○
회사**합병**시 소멸한 법인-양벌규정부담 승계×
- ⑥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사용인○
토지**임차인**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인×
- ⑦ 저작권법: 행위자만 고소하면 법인 고소不要
조세범처벌법: 행위자와 법인 별개로 고소要

구 성 요 건

부작위범

- (일반가능성) 개별가능성, 범죄상황, 부작위
+ 보증인지위, 행위정형 동가치성, 결과, 인과
- 진정, 부진정 구별- 형식설(통설)→ 범법규정
- 보증지위(자신의 자)- 구성요건착오는 **과실치사**
보증의무(구할 의무)- 위법성착오는 **고의살인**

- 보증인의무 = 형식설+ 실질설 (결합설-통설)
· 형식설-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 실질설-**보호의무**(가족, 긴급공동, 보호기능인수)
안전의무(선행행위-위험-위법. 위험원, 타인감독자)
- 작위의무 ⇒ 범적의무(조리상의무 포함) ○
도덕상, 종교상 의무 ×
- 행위정형 동가치성-행태결과범(사기·공갈) 要,
순수결과범(살인·방화) - 따질필요없이 당연인정

부진정 부작위범	법률 계약 조리 선행행위
유기죄 (보호의무)	법률 계약 × ×
확대죄 (감독의무)	법률 계약 조리 ×

① 작위/부작위

→ 1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 **법인도피**
위계-공집방, **중거인멸**죄 성립하면(작위범)
직무유기죄는 불성립(부작위범)

☆ 허위공문서작성과 특수직무유기는 상상경합

☆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 可

→ 보라매병원 의사는 **직위**에 의한 살인방조범
피해자의 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정범

② 위험 · 위법한 선행행위 (도로교통법-적법可)

- 중학생 유인 감금하여 탈진한뒤 방치 사망
- 조카 유인 제방에 빠지자 방치하여 익사
- 폭약상자에 촛불이 붙자 진화하지 않고 도주

③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 (부작위 사기죄)

경매절차 진행중, 도시계획으로 수용될 사전,
담보권 설정사실, 소유권귀속 소송종임 등을 숨김
아들 낳으리라 오인한 자에게 의사가 숨기고 수술
독점계약하면서 같은 제품 판매증임을 숨김

cf **중고차** 팔면서 남은 할부금을 미납 - 무죄
→ 매수인에 대한 사기, 배임×, 판매자에 대한 횡령×

cf **이중매매** 고지없이 후매수인에 등기 - 사기×

④ 타인감독자 (부작위 방조범 - 보증인지위要)

- 은행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
- 입찰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횡령을 방치
- 백화점감독자가 가짜상품 판매를 방치
- 포털사이트 감독관이 음란단화게게 방치

상당인과관계(=인과관계+객관적귀속)

	누적	이중	추월	경합	단절	가설	비유형
인과	○	○	○	○	×	×	○
귀속	×	○	○	○	-	-	△

- 조건설: 범행전 상황 가정, 모든 조건은 등가
- 원인설: 중요한 원인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
-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 인과관계 판단시 상당성까지 함께 판단(판례)
- 중요설: 인과관계와 상당성을 분리
- 합법칙적 조건설: 범행후 상황만 고려(다수설)
→ 인과관계: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관계)
 객관귀속: 위험창출설이론 (상식적 판단)

① 비유형적 인과관계 (판례입장)

- 지병·고혈압으로 심장질환, 수술지연○
- 특이체질로 심장마비, 뇌수종×

② 의사 무조치로 쇼크 일으키고 전원후 사망
의사 연탄가스 중독자에 설명없이 재중독
자상 입은후 김밥콜라 먹고 합병증 사망
여자 넘어뜨려 등에 업힌 딸 사망(폭행치사)
임부 상해하여 4일후 낙태중 사망(상해치사)

③ 건널목사고 놀라서 자전거에서 넘어짐

- cf 무단횡단자가 급정차 택시에 놀라 넘어짐×
- 오토바이 사고 60초후 다른트럭 **역과**로 사망
→ (선행)차량, **후행**차량 모두 인과관계○
- 승용차 감금 피해 나오다 사망(감금치사)
승용차 정신병자 17시간 감금 사망(감금치사)
상해를 피해 길건너다 차사고 사망(상해치사)
시동열쇠 꽂고 하차하여 **11세**가 운전사고○

cf 시동열쇠 꽂고 하차하여 **조수**가 운전사고×

④ 술집못가게 감금+가속 뛰어 사망(중감금치사)

- 속셈강사 호텔 강간미수 뛰어 사망(강간치사)
cf 카바레유부너 여관 강간미수후 뛰어 치상×
- cf 여관 자진투숙 성관계후 뛰어내려 치상×
- cf 강간당한 피해자가 욕독 자살×

⑤ 임차인이 가스 유즈텍크 제거 이사 후 폭발
(임차인→과실책임○, 임대인→과실책임×)

-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위반으로 가스폭발사고
화약취급 **무면허자**를 선임하여 발파중 사상
공무원 감독태만, 무자격하도급자 부실공사
- cf 초지조성공사 수급인이 산불작업 하도급×
- cf 주택수리공사 **전문가**에게 도급주어 사고×
- cf **탄광역대**가 비전문가에게 폭약 맡겨 사고×
- cf **파도수영장** 사망원인 판명 안 된 경우×
- cf **중대장**이 영점이 잡히지 않은 총을 사병에게
인계하여 과실치사(중대장 ⇨ 과실○, 인과×)

⑥ 합법적 대체행위로 상당인과관계 부정

- 원인 입증 안되면 무죄로 추정(다수설, 판례)
- 사랑니 발치후 농배양 하지 않고 사망×
 - 간기능검사 없이 할로테인 마취후 사망×
 - 중앙선 걸친 트럭 왼쪽 뒷바퀴 충돌 사망×
 - 버스가장시 사이드브레이크 조작안해 사고×

⑦ 규범 보호목적 초과하여 상당인과관계 부정

-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욕독자살×
- 피해자가 진화작업에 열중하다 화상×
- 1차형 삼거리 과속중 좌회전 차와 충돌×
- 안전거리미준수 택시가 뒷차 충돌로 앞차충격×

구성요건적 고의

§13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특별규정 있으면 예외

고의의 인식대상 ○	고의의 인식대상 ×
객관적 구성요건 (주,객,행,상,결,인과)	목적, 불법영득의사, 상습 위법,책임, 소주·처벌조건
신분(공무원 존속 ,영아)	친족상도례(친족관계)
구체적 위험범(위험발생)	추상적위험범(위험발생)
기본 범죄(고의상해)	중간결과(치사결과)

- ① 재물 · 타인성 인식 없어 절도 고의 부정
두부상자 · 기간지난빵 버린 줄 알고 취득×
평원답집 고양이를 자기것인 줄 알고 취득×
- ② 살해의 의사 없어 살인 고의 부정
무차별형포로 fathers 칼로 찔러 사망(존속살해×)
임산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사×
- ③ 살인고의 인정
9세 목조름, 군인이 여자 **목조름**, 목재로 **머리침**,
무술교관이 여자 **올대** 침, 과도로 심장관통,
버스로 **50km/h** 돌진
- ④ 강도가 배개로 머리 계속 눌러 사망(강도살인)
(강도할 당시에 살인고의가 있어야만 **강도살인**)
(강도후 살인고의 생기면 **강도, 살인, 실재경합**)
- ⑤ 운전면허증 뺏건의 경고문구 - 무면허고의○
But 유효기간 5년 경과 - 무면허고의○
- ⑥ 여관업자가 구두로 연령확인 - 청소년 혼숙○
건강진단서만 확인 -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 ⑦ 피조개양식장에 닭줄을 놓아 피해발생(손괴)
(손괴고의 인정되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 ⑧ 택시를 갑자기 좌회전 - 공무방해 고의○
- ⑨ 청소작업으로 현장수습 - 증거인멸×
소문 확인위해 목사 일을 질문 - 명예훼손×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채불 - 사기×
- ⑩ 허위에 대한 인식과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원칙] 객관설 - 명예훼손, 기망, 허위작성, 무고
[예외] **주관설** - **위증죄**, 허위감정죄 등

구성요건적 착오

§15 ① 중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광의] 비법적인식+ 범죄결과=과실범 (§13, §14)

[반전] 법적인식+ 비법적결과=불능미수 (§27)

[협의] 법적인식+ 다른범죄결과=사실의 착오

① 보살고의+ 존살결과 → 보통살인 (§15①)

존살고의+ 보살결과 → 보통살인(기본범지)

② 촉살고의+ 보살결과 → 촉탁살인 (§15①)

보살고의+ 촉살결과 → 보통살인(기본범지)

③ 사실의 착오 [표] 정확히 숙지할 것

④ **상해**고의로 돌맹이로 쳐서 죽은줄 알고 옹덩
이에 매장하여 질식사(判개발적 고의-**살인기수**)
인과착오(다), 계획실현, 객관귀속 → 살인기수
미수설 →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

cf **상해**고의로 쳐서 죽은줄 알고 배란다로 떨어
뜨려 뇌출혈사망(개발적 과실-**상해치사**)

□ 택일고의: A 또는 B를 죽이려는 고의

□ 방법착오: A를 죽이려했으나 B만 사망

□ 병발사래: A만 죽이려했으나 A, B 모두 사고

A사망+B사망: A살인기수+B과실치사 상상경합

A사망+B상해: A살인기수+B과실치상 상상경합

A상해+B사망: A살인미수+B과실치사(구체부합설)

4학설대립(학설일치×)(법정부합설)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성난불**·**보일러** 화재(중실화죄) / 촛불, 아궁이×
 - **주차장** 출입구 균열후 무너짐(중과실치상)
 - 농약을 **중조**로 포장해 선반방지(중과실치사)
 - **11세·84세**를 때리며 안수기도(중과실치사)
- cf 정신질환자 안수기도(폭행치사)
- cf 잠귀방출시 사망(폭행치사)

과실범이 성립되는 경우

- 과실 판단기준 - 객관설(통설)
- 일반인 지식, 능력 + 행위자 **지식**○ (**능력**×)
- ① 만취수면자 발 70cm에 촛불놓아 화재
(과실치사죄·실화죄·상상적경합)
- 임차인이 가스 휴즈코크 제거 이사 후 폭발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과실치사죄·상상적경합)
- ② 술취한 친구 팔을 끌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중앙선침범 목격한 후 피행하지 않아 사고
40m앞 견던 아이 튀어나와 버스가 침
전역할 병사 행가래 치다 바다에 빠져 의사
호텔 화재경보 끄고 비상문걸어 화재로 사상
시설운영자가 알콜중독자 독방방치하여 사망
- cf 완전감금 정신병동에서 추락사(간호사과실×)
- ③ 골프중 등 뒤의 캐디에게 상해(과실치상죄)
- ④ 토마토상자 하역중 행인에게 상해(과실치상죄)
⇒ 교통사고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교사의 안쪽유리창 청소지시 여겨 배란다추락×
- 교사가 회초리로 때리는데 구경하다 눈 찔림×
- 무단횡단자가 택시 급정차하자 놀라서 넘어짐×
- 통상적 버스출발중 뒷좌석에서 나오다 넘어짐×
- 버스뒷바퀴 밑으로 4세 장난감 줄다가 죽사×
- 다른 차로와 **근접**하여 운전하다 뒷차 사고×
- 전방 1-2m앞에 넘어온 사람 못피하고 충돌×
- cf 전방 15m앞에 넘어온 사람 못피하고 충돌○
- cf 15m앞에 넘어온 오토바이 못피하고 충돌×
- 의사가 연탄가스중독 **설명**안해 제중독 사망○
- 연탄가스 중독 - (**0.4cm** 수선사항) 임대인×
- (**대규모** 수선사항) 임대인○
- **탄광대대**가 화약 말긴후 아궁이에 놓아 폭발×
- 수술후 부러진 **메스조각** 못찾아 그냥 봉합×
- 소아 백혈병 정맥도관 삽입수술 중 사망×
- 제왕절개수술중 수혈용 혈액없이 출혈사망×
- cf 태반조기박리-**응급**제왕절개중 출혈사망○
-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사고×
-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자선침범 사고×
- 피해자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 사고×
-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
-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
- 차선이 제한표지 지점에서 정차하여 확인의무×
-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 주의의무×
- 굴삭기 후면 or 포크레인 뒷부분의 사고×
-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사고×
- 철로창출로 인한 열차 사고×

야영장 감전사고 ⇒ 행정책임자는 과실×

공사현장 등의 사고 ⇒ 회장, 사장, 공장장, 도급인, 팀장 과실×, 안전관리 총괄하는 현장소장○

신뢰원칙 (→ 신뢰원칙 적용되면 과실부정)

- 자신이 규칙준수 → 타인의 준수를 신뢰○
 상대방의 위반을 미리 **인식**, **목적**한 경우×
 상대방의 준수를 신뢰할 수 없음(**예외**)×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
 (But 사고의 **결정적 원인** 아니면○)

① 자동차-자동차: 원칙적으로 신뢰원칙 적용

-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친 경우
- 택시의 1차로근접 피해 중앙분리대 받고 사망
- 좌회전금지구역에서 후행차 중앙선 넘어 추돌
- 교차로 먼저 진입차량이 나중 진입차량과 추돌

② 자동차-자전거: 차도에서는 신뢰원칙 적용

③ 자동차-보행자: 예외적으로 신뢰원칙 적용

- 자동차전용도로의 횡단자를 차로 충격

→ 우측도로변의 피해자를 발견후 **사상-과실○**

- **고속도로**에 뛰어난 행인을 차로 충격

→ 과속했어도-과실×, 양측충격소-과실×

→ 제동거리 밖에서 미리 목적했다면-과실○

→ 우측도로변의 피해자를 발견후 **사상-과실×**

- **육교**밑으로 불시에 뛰어난 자를 차로 충격

→ 육교 밑의 무단횡단자가 성인임을 고려함

- **횡단보도** 신호 적색시 보행자를 차로 충격

→ 정차한 버스 뒤로 갑자기 뛰어난 상황 고려함

④ 의료 수행분업-신뢰원칙 적용○ (과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의사의 회신을 믿고 치료
- **회복실 간호사**가 인제받지 않은 환자 방치
- **약사**가 제약회사의 약을 조제하여 판매

cf 지휘·감독관계-신뢰원칙 적용× (과실○)

- **주치의**의 과실에 당직의사 과실 개입
- **인턴**이 간호사에게 수혈 지시후 사망
- 간호조무사에게 **직접방법**의 정맥주사로 상해

cf 간호사, 실습생 **Side Injection** 정맥주사-무죄

cf **러시안룰렛** 구경한 동료 형사들-무죄
 (신뢰원칙 적용하여 중과실치사×)

결과적 가중범

- ① 은봉암방화(甲이 방화하고 乙의 처와 딸들 살해)
 丙(乙의 처)·A(큰딸)-현주건조물방화치사
 B(둘째)·C(셋째딸)-현주방화치사·**살인·실체**
- ② 두루마리화장지(甲이 방화 동생乙과 丙 兩 살해)
 乙-현주건조물방화치사(살인죄×)
 丙-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상상**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강도살인·상상**
- ④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을 차로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폭처법 야간 삭제)
- ⑤ (경찰의 정신신호 무시하고 차의 범퍼로 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⑥ 주점홀바닥 강간**미수**후 상처(강간치상기수)
 동거요구중 얼굴가슴강타로 사망(상해치사)
 택시운전수 급회전 강도 과도 상처(강도치상)
 도박돈 빼앗자 배란다로 뛰어 상처(강도치상)
 폭행후 화장실문 부수자 창문박살죽(폭행치사)
 머리 시멘트땅부딪쳐 지병악화사망(폭행치사)
- ⑥ 방화후 피해자가 **진화**하다 화상(현주방화**치상**)
 왼쪽**어깨**쪽지 잡고 쓰러져 상해(폭행**치상**)
 떠밀어 엉덩방아찔고 **심장마비**사망(폭행**치사**)
 교사가 학생 뺨때리자 **뇌수종** 사망(폭행**치사**)
- ⑦ 샷대질에 뒤걸음하다 넘어져 사망(폭행**치사**)
 봉고차 접대부 희롱 뛰어 사망(강제추행**치사**)
- ⑧ 여동생강간범에 복수하다 친구가 칼로 찌름
 패싸움하던 중 1인이 칼로 찌름
 상해공모후 1인이 살인한대 나머지의 죄책
 (이상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 과실범의 공동정범 - (判)○ (多)×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判)○ (多)×

· 행위공동의사로 성립, 결과공동의사 不要 (判例)

· 합동강간하고 떠난후 비닐창고 사망 - 치사×

□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방조 - (判,多)○

위법성론

□ 위법성과 불법의 비교

위법성	관계개념	법질서 전체로 판단	질적차이없음
불법	실체개념	개개의 법률로 판단	질적차이있음

□ 위법성의 평가방법

	규범수명자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객관위법(통)	모든사람	정당방위○, 긴급피난○
주관위법	책임능력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 상당성의 판단

	정당방위	긴급피난	의무충돌	자구행위
최소	○	○	×	○
적합	○	○	×	○
보충	×	○	×	○
균형	×	●	▲	×

긴급피난 균형○ → 고가치 보호할 때만 위법성조작
(동가치, 저가치 보호할 때는 책임조작可)

의무충돌 균형△ → 동가치 보호할 때도 위법성조작
(저가치 보호할 때는 책임조작可)

□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비교

긴급피난	의무충돌
위난 원인 불문	법적 의무 충돌
자기, 타인 법익 위해○	자기의무○ (타인의무×)
행위강제성×	행위강제성○
상당성 ○○○●	상당성 ×××▲

□ 자위의무+ 부자의무 → 긴급피난 (균형●)

□ 자위의무+ 자위의무 → 의무충돌 (균형▲)

□ 전업병신고 > 의사비밀유지 (의무충돌×)

<판례는 오상방위를 정당방위처럼 취급한다>

초소근무 교대자가 뒤에서 소총 겨누자 살해
동료경찰을 칼로 공격한다고 오인하여 살해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

정당방위

- §21 ① 정당방위-무죄(위법성조작)
② 과잉방위-형의 임의적 감면(책임감소·소멸)
③ (야간등) 면책적 과잉방위- 무죄(책임조작)

- 개인적 법익을 위하여○ (국가, 사회법익×)
□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 동물, 자연현상에 대하여× (사람의 사주○)
□ 예방적× (침해행위 기준으로 현재성○)
□ 구성요건해당 불문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싸움× (초과, 중지후 도발, 소극 저항 중○)
□ 무능력, 보충, 경미, 과실도발△ (고의도발×)
①父에게 폭언 폭행하는 자를 1회 구타 사망
(가족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인적드문심야 키스하려하자 혀 깨물어 절단
(정조위한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②공사 방해하는 현수막 철거, 담장 글씨 지움
(시공권인수인의 적법철거없는 행위에 ○)
③주침 처앞에서 소변보고 행패하자 업어치기
술먹고 플라스틱의자 내리치자 손·목살 밀침
침자식 혀소문예 폭행하자 팔잡고 다리물어
(싸움 아닌 소극적 방어행위이므로 ○)
④술 취해 차세우자 넘어뜨리고 3분가량 누름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
강제연행하는 순경에게서 벗어나려고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구해×, 상해의 위법×)
⑤군중들 구타에 손뼉짜기 돌발로 상해(§21①)
폭행당하자 폭진병으로 협박하며 대항(§21②)
취객들 구타에 곡괭이자루 휘둘러 사망(§21②)
어머니에 식칼은 오퍼를 목졸라 사망(§21②)
처를 때리려는 호색한 복부 차서 사망(§21②)
⑥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집주인에 격분, 배척으로 구경꾼상해×(상해)
법18개 담는다고 뺨·팔목 때려 상치×(상해)
나이트클럽원이 손님과 싸우다 상해×(상해)
매형이 처남과 싸우다가 과도로 찌름×(상해)
변태성행위 요구 남편 칼로 찌름×(상해치사)
의붓아버지 살해-현재성○, 상당성×(살인)
경찰이 병원 난동자 가슴 쏘아서 사망×(위법)

긴급피난

§22 ① 긴급피난 : 자기·타인 법익, 현재위난, 상당한 이유 - 무죄(위법성조각)

② 긴급피난 못할 책임자 : §22① 적용×

③ §21②③ 준용 (과잉피난○, 면책과잉피난○)

- ☐ 국가, 사회법익을 위하여○
- ☐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 ☐ 동물에 대하여○, 예방적, 지속적○
- ① **피조개양식장**(금성호사건, 7사클사건)
(손괴 미필적 고의 인정, 긴급**피**난 인정한 대판)
기형아 출산 우려로 임부 **승낙** 없이 **낙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인정한 대판)
- ② 저수지 투신한 여자 구하다 **목졸**자 사망
(과잉피난 인정한 고판)
- ③ 강간범 손가락 빼면서 치아결손×(강간치상)
빌려준 자기어음 빼앗아 찢음×(문서손괴)
A대학 경찰저지료 B대학 집회×(집시법위반)
기절한 **母** 치료위해 군무이탈×(군무이탈죄)

자구행위

§23 ① 자구행위-무죄(위법성조각)

② 과잉자구행위-임의적 강면(책임감소·소멸)

※ (면책적 과잉자구행위×)

- ☐ 과거의 권리침해 → 사후적 긴급행위
- ☐ 자기의 청구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 ☐ 보전가능 청구권○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 ☐ **부동산** 회복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단계×
- ☐ 이중긴급성 = 권리보전불능 + 권리실행불능
- ☐ 대체물(능급전) - 권리실행 不可
특정물(**절도**범에 대해서) - 권리**실행** 可
- ☐ 명시적으로 자구행위 인정한 대판 없다.
- ☐ 절도범을 추적하여 자신물건을 **탈환**-정당방위
물건버리고 도주하는 절도범을 **체포**-정당행위
도주한 절도범에게서 물건탈환-자구행위(다)

피해자의 승낙

§24 피해자 승낙 - 무죄(위법성조각)

- ☐ 개인법익○(국가법익×-위증, 무고 동의- 범죄○)
- ☐ 동의범죄-**미성년의**재간, **피구급부녀**강간
- ☐ 동의감경-승낙**살인**, 동의**낙태**, 현주·타인**방화**
- ☐ 양해(**구**×)의사능력-하자승낙유효(**절도**×)
판단능력-하자승낙무효(**주거침입**○)
- ☐ 승낙(**위**×)-판단능력-하자승낙무효 (사회상규)
- ☐ 사후승낙× (철회○ → 그 전 행위에 영향×)
- ☐ 수술승낙○ →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
- ☐ 추정승낙-명시반대×, 객관추정○, 양심심사○
- ☐ 보호법익, 침해법익 동일한 경우

① 추정적승낙 검토후 → ② 긴급피난 검토
ex 자동차 사고난 운전자 구하려 차량손괴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 (추정적승낙○)

① **양해를** 인정한 경우(구성요건해당성×)

밍크 45마리 절도에 대하여 목시적 동의
둥거녀 지갑 6만원 꺼내는데 목시적 허용

② **피해자승낙을** 인정한 경우(위법성×)

채권자의 **계주임무 대행**을 계주가 승낙

③ **추정적승낙을** 인정한 경우(위법성×)

종친외결의서 위조(형제들의 구 승낙 추정)
사문서위조(양해, 추정적승낙 모두 인정)

④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청기설치 목적 음식점 출입 -주거침입○
1인2역의 협박에 출입허용하여 강간-주침○
화장실 **용변간** 남편인줄 알고 열어줌-주침○
자궁의임신인데 **자궁적출**×(업무상과실치상)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 때문에 승낙은 무효)

⑤ 잠귀방출한다며 배·가슴 **밟음**(폭행치사○)

장난권투 중에 사망 결과(폭행치사○)

정당행위

§20 정당행위: 법령·업무·사회상규-위법성조각

□ **정당, 상당, 균형, 긴급, 보충(판례)**, 현재성×

법령: 공무원 징계권자 노동쟁의 사인현행법체포

업무: 의사, 안락사, 변호사, 성직자

상규: 소극저항, 징계권없는자, 권리실행

① 중학교 교장이 훈계로 학생 뺨 때림○

cf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하여 뺨때리고 실신×(폭행치상)

cf 교사가 5학년 지휘봉으로 허리 때림×(상해)

cf 체육교사가 여중생 때리고 욕설×(폭행·모욕)

cf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들고 “죽여버린다”×(협박)

cf 오줌싸는 아들 담장에 가두고 때림×(학대)

cf 군대에서 구타×, 원산폭격×(강요)

② **정당목적** - 근로조건향상 목적에 한정

cf 경영조치, 공장이전, 구조조정, 민영화계획, 정리해고 등에 반대× (모두 목적의 정당성×)

cf 부당요구를 뺏다면 쟁의하지 않았을 것임×

cf 조합총회의결 거처야만 협약 체결하겠다×
전조합 찬성없이 대우차 지부만의 전원찬성○

찬성결치 거치지 않으면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어도 위법하다(전합)

조정결치 중이지만 조정기간 끝나서 쟁의○

cf 신고절차는 거치지 않았어도 정당행위 가능
사무실 **일부** 점거○ (cf 사무실 점거농성×)

병원의 업무전, 점심시간에 침묵시위행진○

근무시간중 3시간 찬반투표후 1시간 여흥○

cf 적법절차 없이 **준법투쟁**하고 연장근로거부×

③ 자동차 손괴하자 먹살잡고 흔들○

cf 현행법 추적하다 그 아버지의 **주거침입**후 상해×

cf 이혼증거 **간통사건** 적으려 타인 주택침입×

④ 조합총회 회의진행의 질서유지위한 발언○

재건축조합장이 가져분판결로 건물철거○

⑤ 의료행위-정당행위(주류판례)

cf **자궁적출**수술-피해자승낙×(업무상과실치상)

수지합: 의료행위○, 정당행위可

cf 체침·찔질기구·부항·박피: 의료○, 정당행위×

cf 지압·마사지: 의료○(2004判 이후), 정당행위×

⑥ 천주교 사제가 방화범을 숨기고 인도거부×

⑦ 폭행 등에 대하여 비틀거나, 뿌리치거나, 밀치거나, 제지하거나, 떠민 경우○(소극저항)
→ 전치2주 정도 상해 입혔어도 정당행위○

⑧ **수박사리** 책임론자 초당6년女 귀가후자살○

추적주연 불손한 연소자 방뺨자루로 때림○

⑨ **요목고사** 손배청시 탁자 들었다 놓았다○

불법건축에 **일조권침해** 등 손해배상 합의○

교회 이단성 조사위해 고소장 사본 첨부○

교회 담임목사 출교처분 판결문 복사·배포○

뽕밭 유린하는 **소**를 밭에서 끌어냄○

신고없이 **삼보일배** 행진으로 차량통행 방해○

시장변영회가 관리규정 위반자에 **단전**조치○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문짝 떨어져 상해○

인터넷 게시판에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집단관외 **입류**집행 중에 채무자에 상해○

형제복지원 부랑인들 **수용**하고 시정조치○

정신병자 **감호** 위해서 야간에 시정조치○

수돗물 안나와 **상수도관** 확인하러 주거침입○

저수조 청소, 관리하려고 자물쇠 뜯고 침입○

But 고지서 빼앗고 사무실 짐기를 들어냄×

후보자 친족에 식사제공○ 규칙 초과 축의금×

고소, 고발, 민원제기의 위협만으로는○

ex **치료비** 요구에 불응시 고소하겠다○

cf **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사용하면×

cf 자기 채권행사를 위해서 폭행·협박을 사용×

[**례수단법법설**-공갈, (多)이득물법설-폭행·협박

cf 주주가 회사되려 강제 장부열람×(**방설수박죄**)

cf 확성기로 소음고통×, 낙선운동×, 대북송금×

cf 안두회 살해×, 단군상 철거×

책 임 본

책임능력

- §9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 무죄(책임조각)
 §10 ① 심신상실자 - 무죄(책임조각)
 ② 심신미약자 - 필요적감경(책임감경)
 ③ 원·자·행 - 전2항 적용×(범죄성립)
 §11 농아자(농자&아자): 필요적감경(책임감경)

- 10-14 : 보호처분-**상습**자료○ 다시 공소제기×
 14-18 : **사형, 무기형**×→15년 유기정역(소59)
 14-19 : 부정기형(소60①) (장기10년, 단기5년)

무기정역의 작량감경은 **정기형**(판례)

- 소년의 판단(소60②): 사실심판결선고시 기준
 □ 심신장애 : [원칙] 전문가 감정 不要
 But **의심, 불분명**→ 감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기속되지 않고 **법률적, 규범적** 판단
 ① 3일간 술마심(책임○), 피해당상증(심신미약)
 ② 죄증인멸 + 알리바이 조작 노력 -심신상실×
 ③ 청신분열증, 긴장형청신분열증, 편집성정신병 - 심신상실(책임능력×)
 ④ 목사를 사탄이라며 살해(기억○ ≠ 책임능력×)
 ⑤ 충동조절장애, 소아기호증: **원칙-심신장애**×
 예외-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되면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원인시), 착수(원인시) 일치설...정형성反
 책임(원인시), 착수(**실행시**) 예외설(다)...책임反
 □ 살해하려 칼 준비후 **술마시다** 잠든 경우
 → 일치설(살인**미수**), 예외설(살인**예비**)
 □ **살인**고의로 만취하여 살인하고 절도한 경우
 → 살인죄만 성립○, (절도죄×)
 □ 폭력 **소설, 습벽** 있는 자가 만취후 상해행위
 → 과실 원자행 (과실지상죄○)
 □ 폭력 습벽 있는 자가 만취후 폭행행위
 → 과실 원자행 (과실폭행규정 없어 무죄)
 □ 폭력 습벽 없는 자가 실수로 만취후 상해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죄

금지착오

§16 금지착오: 법령상 범죄 아니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 무죄(책임조각)

- 범률부지: (判)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무조건처벌**
 (多) 금지착오로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 범률착오: (判) 정당한 이유 있으면 **고의조각**
 (多)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이유 있는 경우(판례)**
<공무원의 잘못된 말을 믿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

- ① **비디오방**에 미성년자 출입
 cf 디스코클럽 미성년자 출입×(범률부지)
 ② 공무원말 듣고 채광작업위해 **산림훼손**
 cf 벌채허가기간 경과후 잔존목 벌채×(범률부지)
 ③ 유통직업소개 허가로 **외국인근로자**까지 알선
 cf 러시아여성들 유흥업소에 보내 사용×(범률부지)
 ④ 변리사말 듣고 **의장법위반**(발가락양말)
 cf 상표법위반(대법원판례 잘못 이해)- 정당한이유×
 ⑤ **선관위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 배부
 cf 선관위 직원에 문의후 반론 기재한 의정보고서×
 ⑥ 검찰 혐의없음 믿고 **가감삼신전대보** 제조
 공문 믿고 허가 없이 **미수기부**(쌀과자) 제조
 초교교장이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
 cf 제약회사에 생아편 구해줌-금지착오, 정당한이유×
 ⑦ 부대장 허가를 믿고 **군부대** 내에 유류 저장
 향토예비**군**대원 신고가 되어있어 신고안함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중** 휴가나와 이탈
 ⑧ 변호사말 믿고 **채권** 신고안해 긴급명령 위배
 공무원말 믿고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
 관청말 믿고 **장 의사**가 장의기구·물품 판매
교통신고상담센터 직원 중재후 수수료받음
 ⑨ 봉인표시 : 공법해석잘못○ **법규해석잘못×**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 위·전·착: (判) 정당한 이유 있으면 **위법성조각**
 (多) 법효과제한적 책임성-고의인정, 과실범효과
 · 중대회장 변사체사건, 당면병사건(여우고개사건)
 · 초소근무교대(배회철량사건) :
 살인고의 있는데 대항해서 소총 발사 - 정당방위
 살인고의 없는데 대항해서 소총 발사 - 위·전·착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12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 - 무죄(책임조각)

- 폭력 - 강제(심리)○, 절대(물리)×→직접정범
- 협박 - 자기, **친족**→(多)사실혼, 사생아○
- 강요된 범죄의 간접정범과 강요죄, 상상적경합
- 행위당시 구체적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병역거부판례)

□ 초범규격 책임조각사유

친구, 재산 등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상관의 위법하나 절대적 구속력에 따른 행위 긴급피난에서 동가치, 저가치를 위한 경우 의무충돌에서 저가치를 위한 경우

- ① 납북된 후, 피납된 후, 초종란간부의 강요로, 무장공비의 위협으로 한 행위×(책임조각)

cf 자의로 복한으로 탈출후 찬양○(국보법위반)

cf 납북 **경업**자가 또 납치되어 복괴에 정보제공○

cf 강제된 **성장**교육과정으로 테러행위○(김현희)

② 수험생이 시험문제 알게 되어 정답암기×

cf 공방간에 시험문제 알려주어 답안지에 베껴쓰○

③ 나이트 대당 34명 **일부의 학생**중만 검사×

④ 이혼남의 **후환**이 취소되었으나 계속 동거×

⑤ **남편의 구타**에 못이겨 허위 고소장 제출×

⑥ **최선의 노력**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못함×

cf **중언거부권 포기**하고 허위진술○(위증죄)

[전합] 중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했으면 위증×

cf **유죄판결 확정**되었는데 별건에서 범행부인○

cf 명령, 지시, 좌천, 해고, 때려준다든 위협○

미 수 본

장애미수

§25 장애미수 : 실행착수후 미종료 또는 실행중요후 결과불발생 - 형의 양의적감경

	이론 배경	미수의 불법	미수의 처벌
객관설	구파(객관)	결반	필요적 감경
절충설	현대(절충)	결반 + 행반	입의적 감경
주관설	신평(주관)	행반	기수와 동일

	실행착수시기	주거침입절도
주 관 설	범죄의사표시	담 넣어 들어갈때
절 충 설	법익에 직접위협	방문 열고 들어갈때
실질객관	실행행위 위험성	금고 문을 열때
형식객관	범죄 정형 행위	금전 에 손들때

- 공동정범 - **일부** 실행으로 전부 실행착수
- 간접정범 - **이용**행위시 (피이용자의 행위시×)
- 교사방조 -(정범에 가공×) **정범**의 실행행위시
- 위계위력살인 - **위계**위력을 행사할때
- 자살교사방조 - 자살을 **교사**방조할때(다)
- 촉탁승낙살인 - (촉탁승낙×) **실행**행위할때
- 원자행 - 장애상태하에서 범죄**실행**행위시(다)
- 부진정범작위범 - 직접적 **위험** 초래·증대(다)

① 절도의 실행착수

- 차안 밍크코트 훔치려 **앞문**손잡이 당김○
- 고속버스 선반위 가방의 한쪽 **걸쇠** 옴○
- 소매치기가 **양백** 주머니 겉을 더듬음○
- 담뱃터 **구리**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감○
- 책상위 라디오 훔치려 **라디오선** 건드림○
- 차안의 물건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비쳐봄×
- **소용정** 중에 가방으로 바지 왼쪽주머니 스침×
- 전화채권 사주겠다면서 **골목길**로 유인함×

cf 탁상**시계** 또는 **통장** 들고나오다 적발○(기수)

cf 승용**차** 시동걸고 200m 가다가 적발○(기수)

cf 승합**차** 절도가 시동못걸고 10m 전진○(미수)

② 주거침입죄도의 실행착수

- (주간 침입) 절도 - (주거침입후) **물색**행위시
 ex 주간 침입후 물색전 발각-주거침입 (절도×)
 ex 주간 침입후 물색후 발각-주거침입+ 절도미수
 □ 야간주거침입절도 - 주거**침입**시
 ex 야간 침입후 물색전 발각-야주절미수
 □ 손괴후 야주절 - 야간에 자물쇠 **손괴**시
 ex 야간 자물쇠 손괴후 발각-특수절도미수

③ 주거침입의 실행착수

-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열 때○
- 열려있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봄○
- cf 사람없으면 들어가려고 **초인종**을 눌러봄×
- **메란다**에 매달려 손전등으로 비춰봄○
- cf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

④ 특수강도의 실행착수

- 야간에 창살로 침입후 헛기침에 놀라 도주○
 (주거침입시설 대판 : 특수강도의 미수)
- 야간에 강취하려 **동정**을 살피다 14세女 강간×
 (폭행협박시설 대판 : 주거침입·강도예비·강간)
 (성폭력특별법 적용시 → 강도예비 + 특수강간)

⑤ 사기의 실행착수

-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 말소청구○(2006전합)
- **前소유자**가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 (기타의)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 자기앞 허위가동기 기한 분등기이행 소제기○
- 허위채권으로 법원을 속여 **지급명령**신청○
- 기한미도래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
- 허위채권으로 소제기 없이 **가압류**신청×
- 화재보험금 받으려고 자기건물에 방화×
- 보조금 받으려고 태풍피해를 허위신고×
- 지원금 받으려고 장애인 복지비용 허위신고×
- 관세포탈하려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허위신고×
- 북한과 회합하려다 관문점 횡선 못미쳐 저지×
- 병역 기피하려고 병사용진단서 발급×
- 범죄수의 은닉하려고 계좌개설×

⑥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의 실행착수

- 04시 女 뛰어내린다는데 **메란다**로 침입(강간)○
 내연女 19세딸 **침대놓이고** 가슴등 만짐(강간)○
 cf 자는 사촌女 가슴·엉덩이 만지다 도망(강간)×
 자는女 탈의시켜 성기삽입하려다 포기(준강간)○
 女의 상의견고 유방만짐(강제추행)착수○, 기수○
 女와 부루스 중 유방만짐(강제추행)착수○, 기수○

⑦ 기타 범죄의 실행착수 여부

- 살해하려 낫 들고 다가가자 피해자 도망(살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케 하여 협박(강금·강간)○
 휘발유 뿌리고 사람 몸에 점화(현주건조물방화)○
 밀수품을 전마선에 실음-착수○ (양륙-기수○)
 간첩이 국내침투-착수○, 기밀수집-기수○
 작은 창으로 얼굴만 침입(주거침입)기수○
 • 신용카드 제시후 전표 서명못함(카드부정사용)×
 • 주점에서 미성년 신분증 요구하며 테리고나음×
 • 통화위조하려고 원판·인화지를 현상(통화위조)×
 • 허로뽕제조 원료물색 중 적발(아편제조)×
 • 위조한 신분증을 항상 휴대(위조문서행사)×
 • 라이타를 점화하려다 빼앗김(현주방화)×

중지미수

§26 중지미수 :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행위중지 또는 결과발생방지 - 형의 필요적 감면

객관	외부(장)	내부(중)
절충	타율(장)	자율(중)
주관	비윤리(장) 윤리(중)	
기타	프랭크공식 (가능성으로 자의성을 판단) 규범설 (합법성으로의 회귀 있으면 중지미수)	

□ **자의성-비윤리적 중지○, 일시 중지○(多·判)**

외부상황 - 체포.검거, 잠복근무, 행적탐문 등
타율동기 -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
자율+비윤리동기 - 일시중지, 선전 떠올라 포기
자율+윤리적동기 - 동정, 후회, 연민, 양심가책

□ **착오**는 인식을 기초로 판단 (절충설: 다수설)

- 1천만원 훔치려는데 **1천원인대** - 장애미수
- 1천만원 훔치려는데 **무일푼인대** - 불능미수
- 경찰오는 소리를 **낙엽소리로 인식** - 중지미수
- 낙엽소리를 **경찰오는 소리로 인식** - 장애미수

착수미수	착수○ 실행× 결과×	중지
실행미수	착수○ 실행○ 결과×	중지 + 결과방지

착수미수, 실행미수 구별실익 - only 중지미수
결과방지위해 노력했으나 사망, 전소, 반소 - 기수

단독범	자신의 행위만 중지하면 중지미수
공동범	공범의 범죄까지 방지해야 중지미수

- ① 공간 착수후 “**천혜지면** 응해주겠다”-중지○
미성년자 약취후 **마음이 약해져** 중지-○
(특가법 5-2 인질잡고 금품취득)
 - ② **청산가리** 술 줬다가 거두어가서 버림-○(고판)
 - ③ 甲·乙이 천광상회 절도 공모+ 착수(=물색) 후
甲이 가책받겨 주인과 함께乙을 체포
(甲-절도의 **중지미수**, 乙-절도의 **장애미수**)
- cf 甲·乙 엔진오일 횡령 공모후 甲은 철회했으나
乙이 횡령함 (甲·乙 모두 횡령 **기수** 공동정범)
- cf 다단계사기 사입한 이후 다른 공범 사기-**기수**
- cf **대마** 2상자 샅가다 불태움(대마매매죄 기수)
- cf 강도모의후 “**이P**”하며 못따라감-강도상해기수

불능미수

§27 불능미수: 수단·대상의 착오 (**주체착오×**)
+ 결과불능 + 위험성 - 형의 임의적 감면

구객관설	절대불능(물벌)	상대불능(처벌)
신객(구위)	행위당시 행위자 + 일반인 인식 기준	
절충(추위)	행위당시 행위자 × 인식 기준	
주관설	(미신범만 불벌)	모두 불능미수

- 설탕, 유향의 살인력을 믿음 - 불능범
 - 독약병으로 알고 설탕병을 짐음 - 불능미수
- ① 농약·취약 치사량 미달, 탄자불량 - 불능미수
초우뿌리, **부자** 단인 물 마시게함 - 불능미수
 - ② 배합미숙으로 히로뽕제조 실패(불능미수)
cf 원료불량으로 히로뽕제조 단념(장애미수)
cf 경험부족으로 염산제철에페트린 생성(불능범)
 - ③ 살해하려 **브레이크**액 유출시켜 제동되지 않았
지만 인도에 부딪혀 위기모면 - 불능미수
 - ④ 甲이 임대차계약하고 처 丙만 **전입신고** 후,
계약서를 丙명의로 바꾸고 소액보증금 배당
무죄(사기불능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공집방×)
 - ⑤ **소송비용** 편취의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무죄(사기불능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어 각하)
 - ⑥ **사자**, 허무인 명의 허위소송- 소송사기×(무죄)

예비죄

§28 음모·예비: 법률 규정있는 경우에만 처벌

- ① 살해 대상 미확정-무죄(**살인예비×**)-전속범익
cf 노상강도 대상 미확정(**강도예비○**)-비전속범익
- ② “총을 쏘쳐 **한방**하자”-무죄(강도음모×)
- ③ 밀항위한 도항비 약속후 포기-음모○, 예비×
- ④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 - 법률주의 위반
- ⑤ 적측 연락없이 기밀수집(편면적 간첩)-예비○
- ⑥ 위조하려고 필름, 인화지 만들-위조예비○
- ⑦ 과세포탈하려고 과세가격 심사서 받음-예비○
- ⑧ 북한과 연락하여 방북신청(탈출죄)-예비○

공 범 본

필요적 공범

□ 내부참가자 상호간 - **총칙 공범**×외부관계자 - **총칙 공범**可□ 대항범 중에서 처벌규정 없는 자는 무죄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하여 교사·방조로 처벌×)

- ① 형법(음화판매자만 처벌)-매수인은 무죄
 ② 관세법(양수인만 처벌)-양도인은 무죄
 ③ 변호사법(불법고용행위만 처벌)-변호사는 무죄
 ④ 자가용화물운송자만 처벌-화물소유자는 무죄
 ⑤ 약사법(판매자·취득자 모두처벌)-판매자는 정범

	객관주의(구파)	주관주의(신파)
범죄참가	정범공범구별	단일 정범 체계
정범개념	재안 정범개념 (간접정범은 공범)	확장 정범개념 (간접정범도 정범)
공범처벌	형벌 확장 사유	형벌 축소 사유
정범공범구별기준	형식객관(직접실행) 실질객관(원인설)	주관설(조건설)
공범종속	공범 종속 성설(다)	공범 독립 성설
종속정도	재안 종속성형식(다) (구○ 위○ 책×)	×
공범미수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
간접정범	공범과 구별하여 필요 한 개념이다	공범의 일종이므로 불필요 한 개념이다
공범신분	33본문 ○ 단서×	본문× 33단서 ○
자살관련	×(특별 예외 규정)	○(당연 원칙 규정)

공범종속성이 완화될수록 (=공범독립성이 강화될수록)

☞ 간접정범은 공범 개념 속에 흡수된다.

공범종속성이 강화될수록 (=공범독립성이 약화될수록)

☞ 공범은 간접정범 개념 속에 흡수된다.

제한적 정범개념에서는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본다.

확장적 정범개념에서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본다.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이 필요하며 정범으로 본다.

공범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이 필요없어 공범으로 본다.

간접정범

§34 ① 간접정범 :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을 교사·방조 - 교사·방조의 예로 처벌

② 특수교사방조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정황결과발생 - 교사는 정범의 2분의 1까지 가중,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 구.조각 - 자살·자상, 고의×, 신분×, 목적×
 □ 위.조각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 책.조각 - **8세**이용(**간접정범**), **13세**이용(**교사**)
 □ 과실처벌자 이용○, 친족상도례 불벌자 이용×
 □ 정범 배후의 (간접)정범 이론 - 소수설
 □ 자수범(위증, 허위신고) **간접정범**×, 협의**공범**○
 ex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시킴(자수범) - 무죄
 (위증-교사×, 위증-간접정범×, 증거인멸-위조×)

- ①父가 7세·3세구 강물에 빠져 죽게 함(살인죄)
 바람편女 위협하여 면도칼로 콧등절단(중상해)
 조합카드 금액을 고치게 함(유가증권변조)
 12·12 군지휘권 장악 계엄 전국 확대(내란)
 ② 피해자의 자살 이용 → 살인죄(협의동사) 참조
 ③ 출판물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요건)
 1) 기사에게 제보하여 2) 기사화될 것
 ④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1) 사인×, 2) 보조공무원이 상관 결재이용○
 ⑤ 식용유 제조법의 없는 자에게 제조케 함○
 경영자가 직원에게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케함○
 검사와 영장전담판사 기망하여 영장구급케함○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자수범)
 ⇨ 발행명의인만 주체○, **명의차용인**은 주체×
 cf 명의차용인이 **발행명의인**과 **공모**하면 주체○
 (‘: 자수범도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공동정범可)

공동정범

§30 공동정범 :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범죄공동설	다른 구성요건 간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판)	다른 구성요건 간의 공동정범○

- **공모** - 목시연락○, 우연히 만나 암묵상통○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
 ex 신문사사주와 광고담당자의 공갈행위○
 ex 강간범 따라가서 신호받고 운전행위○
 ex 딱지어음 발행하여 매매(사기죄)○
 cf 딱지어음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을 속여 매도×

- **공동실행** - 타인행위를 **용인**×, 서로 **이용**○
 ex 공모가 있었던 이상, 범행 부근 **차량**대기,
망보다 **답배** 사리감, 사후 **장물**처분 등 모두○

- 공모의 효과 - 공동정범 상호간에 **장물죄**×
 ex 특수강도 공모후 강도, 망, 차대기, 장물알선
 (특수강도 **공동정범**○, **장물알선죄**×)
 cf 오토바이 훔치면 사주겠다(절도**교사**+**장물**취득)
 cf 상습장물범이甲과 乙에게 “열심히 일하라”
 (상습장물취득+**특수절도**교사→ 2명에게 절도특정)

① 공모가 없는 경우

전직대표이사가 횡령제외에 착방 응시(무죄)
 채팅女 강간 의사표시없이 이야기만 함(무죄)
 시라소니파의 보복살인에 참여안함(무죄)

② 공모자 중에서 누구도 실행이 없었던 경우

부정채점 공모후 청탁이 거절됨(무죄)
 (‘ 업무방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

cf 공모공동정범: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착수하면
 다른 공모자까지도 공동정범 인정

③ 승계공동정범(판례-가담이후만 책임)

- 농협백미의 부정의상판매 도중에 가담○
- 공범자의 범인도피 도중에 스스로 도피계속○
- 교통사고넌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유기후 도주
 (업무상과실치상·유기죄 공동정범-가담이후책임)
 cf 약취유인+ 급품요구 - 주교사(특가범위반 정범)
 급품요구한 여학생(특가범위반 **종범**) 공동정범×
- cf 횡령죄 기수 후에 공동취득을 승낙×
- cf 회사비밀 반출 후에 접촉하여 영업비밀취득×
- cf 영산홍 절취 후에 함께 운반× (장물운반죄도)
 ⇒ 범죄 종료후 가담자는 승계적 공동정범×

④ 과실공동정범(판례-공정, 다수설-부정)

공정	행위공동설(판), 과실공동·기능적행위지배, 공동행위주체설, 과실공동·행위공동설
부정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공동의사주체설, 기능적행위지배설(다)

- 화물차돌진, 열차충돌, 질차음주운전, 뺑식충돌,
 터널무너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판례다수
- cf 운전교습위해 **조수석** **동승**했는데 사고(무죄)
 cf **선임범** 지시로 철도 무단횡단 열차사고(무죄)
 cf 차주의 자진운전을 **운전수**가 방치(무죄)
 cf 선박의 실화에 대한 **선장**의 행정상책임(무죄)
 cf 중선의 사고에 대한 선단의 **선장**책임(무죄)

⑤ **공모공동정범**(판례-공정, 다수설-부정)

공정	공동의사주체설(판), 간접정범유사설(판)
부정	실행본당설(다), 기능적행위지배설

비서실장 고개만 끄덕(내란목적살인 공동정범)
 상해공모후 사무실대기(상해치사 공동정범)
 재단이사장의 부정입학지시(업무방해 공동정범)
 망보다가 담배사러 갔다옴(강도상해 공동정범)
 강도공범 강간시 자녀 감시(강도강간 공동정범)
 폭력두목이 부하에 죽이라고 고함(살인 공동정범)
 한총련지휘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공동정범)
 한총련의장(변사체검시방해 공동정범)

⑥ **공모후 실행착수전 이탈** (무죄or음모죄)

시라소니과의 보복결의에 동의안함(무죄)
 절도 약속후 약속장소에 가지않음(무죄)
 불량배들의 저수지살해에 공모후 이탈(음모)
 택시강도공모후 시비하는동안 산쪽도주(음모)

cf 강도모의 주도자가 “어?”라면서 **비대면체격**에
 범행현장에 못 따라감(강도상해 공동정범)

⇒ 공모 **주도**하여 영향 미친자는 적극노력으로
 실행에 미친 영향 **제거**않으면 공모이탈 아님

⑦ **실행착수후 이탈**(다른공범 중지시켜야 중지미수)
 다단계사기 공모하고 실행후 그만 두었으나
 다른공범들 계속 사기 (이탈후에도 사기기수)

⑧ **1인의 초과실행**

- 甲이 폭행치상후 약국에서 치료후 귀가했으나,
 공범이 다른 피해자 폭행치사(폭행치상) 치사x
- 甲이 강도 실행중 장풍을 뒤흔며 모르는 사이
 공범이 피해자를 강간(특수강도) 강도강간x
- 강도공모후 1인이 상해-다른 공범도 **강도상해**
- 강도공모후 1인이 살인-다른 공범은 **강도치사**
 ex 등산용칼 강도공모후 1인만 칼을 소지
 ex 술취한자 강도공모후 현장에서 돌맹이소지
 cf 전원 쇠파이프 등 휴대 - 모두 **강도살인**

⑧ **동시범의 경우**(§19와 §263의 관계)

- 가해행위 자체가 **불명**하면 → 무죄로 추정
 甲, 乙 중 1인의 소행으로 → 무죄로 추정
공모(의사연락)가 있었다면 → 전원 기수책임
- 동시범 요건 - 2인이상, **실행○, 공모x**
- 동시범 + 원인**판명** → 판명된대로(인과관계)
 동시범 + 원인**불명** → §263(기수), §19(미수)
- §263(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적용범위
 (多) 상해, 폭행치상, x x
 (判) 상해, 폭행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

① 甲, 乙이 음료수에 설사약 넣어 丙 설사(상해)
 (공모x + 누적 인과관계) 甲, 乙 상해미수(동시범)
 (공모x + 이중 인과관계) 甲, 乙 상해기수(동시범)
 (공모○) 甲 혼자 설사약 넣었어도 甲, 乙 모두
 상해기수의 공동정범 (∴일부실행 전부책임)

㉔ 甲폭행, 乙폭행치상으로 丙사망결과
 (判) §263-甲, 乙 폭행치사의 공동정범
 (多) §19-甲폭행, 乙폭행치상의 동시범

㉔ 甲상해, 乙상해로 丙사망결과
 (判) §263-甲, 乙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多) §19-甲상해, 乙상해의 동시범

㉔ 甲강간, 乙강간으로 丙상해결과
 (高判·多) §19-甲, 乙 강간의 동시범

㉔ 甲의사 과실, 乙의사 과실로 丙사망결과
 (高判·多) §19-甲, 乙 무죄 (∴과실범의 미수x)

⑨ **합동범의 공동정범** (다.판-현장설)

□ 합동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

- 빼끼주점에서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多) 단순절도의 공동정범 or 특수절도의 공범
 (判) **특수절도의 공동정범(3인이상공모, 2인이상현장)**
 공범일반원칙적용 (수괴-**정범**표지○, 행위**기여**↑)
 ex 甲, 乙이 절도 공모후 乙 혼자서 절도 실행한 경우
 → 甲은 단순절도 공동정범, 乙은 단순절도 정범

교사범

- §31 ① 교사범 :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② 효과없는 교사(피교사자가 승낙후 착수인참)
 : 교사자 · 피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
 ③ 실패한 교사(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음)
 : 교사자를 예비·음모로 처벌(피교사자는 불벌)

- 정범의 불벌 췌(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정범행위가 불법하지 않으면 간접정범 可
- 피교사자가 특정범죄를 결의토록 해야 한다.
 범행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 특정 不要
 조폭에 **재산포기각서** 받아오게 부탁(협박교사○)
 연소자에게 **밥값**을 구해와라"-무죄(·절도특정×)
- 동일한, **감경적** 범죄 교사하여 실행 - 교사×
가중적, 전혀 **다른** 범죄 교사하여 실행-교사○
 cf 피교사가 범죄결의시 교사범 성립여지없다(○)
- ① 범인 자신을 위해 허위자백시킴(범인도피교사)
 범인 자신의 형사증거 인멸시킴(증거인멸교사)
 목적 없는 자에게 모해위증시킴(모해위증교사)
 피고인 자신을 위해 위증시킴(위증교사)○
 피무고자 자신을 교사하라고 시킴(무고교사)
- ②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사망(상해교사)
 "**다리를** 부러뜨려 입원케하라"-중상(상해교사)
조폭두목에게 "혼내주라"-사망(상해치사교사)
 "후회하도록 **병신**만들라"-사망(상해치사교사)
 전직경호원에 **중상**에 교사-사망(상해치사교사)
- 교사의 착오
 교사보다 적게 실행 - ① 일치 ② 예비음모
 교사보다 초과 실행 - ① 일치 ② 결과가중
 교사와 전혀 다른 실행 - ① × ② 예비음모
- ※ 기도된 교사는 처벌규정(§31②③) 있으므로 예비○
 ※ **강도예비**>절도, **살인예비**>상해, **방화예비**

□ 방조의 착오

- 방조보다 적게 실행 - ① 일치 ② ×
 방조보다 초과 실행 - ① 일치 ② 결과가중
 방조와 전혀 다른 실행 - ① × ② ×

종 범

- §32 종범 :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
효과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 - 불벌 (규정×)

□ 각칙상 **정범**은 총칙상 방조×(필요적감경×)

자살방조, 간접방조, 장물알선, 도주원조, 범인도피
 도박개장, 아편흡식등장조세제공 등

□ 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 (기수의 고의)
 공인회계사가 주식공모 사기임을 모르고 허위감사
 보고서 작성-무죄(·방조고의○, 정범고의×)

① 정신적 방조 인정 경우 (범행결의 강화)

분신자살 유서대필(각칙상 자살방조죄의 정범)
 인천시청 기습점거시위 현장촬영(폭처범위반)
 부정인출한 주식 관리(사문서위조행사·사기)

cf 병역기피자에 "**몰조심**하라"-무죄(결의강화×)

② 무면허운전자에 자동차제공(무면허운전방조)

명의수탁자 무단처분에 매수인소개(횡령방조)

cf 주인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 안내한 웨이터×

cf 부동산 이중담보제공을 알면서 가담×

③ 부작위 방조범 (타인강도의 **보통인지위**)

- 은행장이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방치
- 입찰공무원이 입찰보증금 형령을 방치
- 백화점 감독자가 상표법위반행위를 방치
- 인터넷 포털담당이 음란콘텐츠를 방치○
 (음란민화 삭제 요구할 **조리**상 의무○)

④ 무례한 하급자 교육시키는 줄 알고 각목 줌
 -사망(특수폭행**차사**의 방조-예견가능성×)

<공범관련 암기사항 정리>

	공	간	교	방
과실에 의한 -	(판)○	×	×	×
과실범에 대한 -	(다)×	●	×	×
부작위에 의한 -	▲	×	×	▲
부작위범에 대한 -		(○)	●	●
예비에 대한(기수고의)	○	(○)	●	×
예비에 대한(미수고의)	×	×	×	×
예비에 대한(예비고의)	×	×	×	×
편면적 -	×	×	×	●
과실에 의한 - 진정부작위범 × · 부진정부작위범 ○				
불능미수의 중지 (다)○, 예비의 중지 (판)×, (다)○				
간접·연쇄 교사○, 간접·연쇄 방조○				

[해설]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약자 부작위에서 △ = 보증인지위 있으면 ○ (없으면 ×)

예비에 대한 교사→ 기도된 교사 (§31②③ 규정○)
예비에 대한 방조→ 기도된 방조 (규정×)

예비단계에 방조 → 정범이 실행착수하면 방조성립
정범이 실행착수안하면 불가별

공범과 신분

§33 [본문]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범에 전3조(공동정범·교사범·중범)를 적용한다.
[단서] 부진정신분범에서는 (비신분자를)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본문(연대성)과 단서(개별성)로 해결>

§ 33	공모 비신분 → 신분	신분 → 비신분
구성	신분·성립·과형 (判 = 學)	신(간접정범), 비(무죄) 제33조 본문×, 단서×
가감	(判) 신분범으로 성립 비신분범으로 처벌 (多) 비신분·성립·과형	비신분·성립·과형 (判 = 學)

<33조 적용 ×, 제한종속형식(다수설)으로 해결>

규정×	비신분 → 신분	신분 → 비신분
위법조각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책임조각	책임○ 책임×	책임× 책임○
형벌조각	형벌○ 형벌×	형벌× 형벌○

□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 ⇒ ① 진정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
② 소극적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공범관계

① 비신분자와 가감적신분자의 공모 (判≠多)

ex 甲비은행원+ 乙은행원 → 은행의 공금을 횡령
甲-(判) 업무상횡령죄 성립, 단순횡령죄로 처벌
(多) 단순횡령죄 성립·처벌
乙-업무상횡령죄 성립·처벌(判·多)

② 가감적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 (判=多)

상습-(判·學)신분○, 목적-(判)신분○, (多)신분×

ex 모해목적자甲- 목적없는乙에게 위증을 교사
甲-(判)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성립·처벌
(· 제33조는 제31조의 특칙)
(多)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성립·처벌
(· 공범종속성설 일반원칙대로)
乙-단순위증죄·성립·처벌

ex 상습도박자甲 도박 + 비상습乙 도박을 방조

甲-상습도박죄(포괄일죄)-성립·처벌(判·多)
乙-단순도박죄·성립·처벌

③ 위법조각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 (判=多)

ex 치과의사甲이 치과기공사乙에 치료행위 지시
甲-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성립·처벌
乙-무면허의료행위(정범)-성립·처벌

④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모한 비신분자-무죄

군용물의 업무상횡령과 횡령-제33조 본문
부작위범 간의 공동정범-모두 보증인지위 要

죄 수 문

- ☐ 법익표준-판례의 원칙적 입장
- ☐ 의사표준-연속범(수뢰죄-포괄일죄)
- ☐ 행위표준-간통, 강간, 무면허운전(실체경합)
- ☐ 구성요건-조세포탈, 관세부정환급(실체경합)

보충관계

- ① 두 번 예비 후 형을 살해(살인기수 일죄)
- ②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에 주거 침입죄가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음

불가벌적 수반행위(흡수관계)

- 인장위조하여 문서위조에 사용(문서위조 일죄)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감금(감금죄만 성립○)
 낙태에 수반되는 부녀의 신체상해(상해죄 성립×)
 타인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사문서위조,행사×)

불가벌적 사후행위(흡수관계)

- ☐ **주된행위** - 범죄가 **성립**할 것(기수)
 사후행위 - 주된범죄와 법익, **행위자체 동일**
 구성요건해당, 주된범죄보다 **침해양이 적을 것**
- ☐ 절취한 장물을 친구에게 매각하고 돈받음
 → 매각은 불가벌사후행위, 받은 돈은 장물×
- ☐ 절취한 장물을 기망하여 매각하고 돈받음
 → 매각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돈은 장물○
- 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된 경우**
 -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현금대신교부(불벌)
 - 절취한 **열차승차권** 역직원에게 환불받음(불벌)
 - **악속어음** 편취후 피해자의 채권에 변제(불벌)
 - **산림절도**후 관계당국 기망하여 매수(불벌)
 - **장물보관자**(장물보관죄○)가 이를 횡령(불벌)
 - 명의수탁자가 **제1횡령**후(횡령) **제2횡령**(불벌)
 - 甲·乙 공유불하 부동산을 丙에 매도하여 乙에 대한 배임으로 처벌된 후 丙에게 재매도(불벌)

- cf 공유자가 담보가등기 경료후 말소했다가 새로운 영득의사 실현 - 2개의 횡령 경합범
- cf 신탁부동산 일부의 보상금을 소비 +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 - 2개의 횡령 경합범
- cf **어위채무** 부담하며 담보가등기 설정후 가등기 양도 및 **본동기**경료(강제집행면탈 실체경합)
- cf 근저당권 설정 약정으로 금원**편취**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기하여 **매입**(실체경합)
 (사기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여 등기의무○)
- ② 횡령한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불벌)
 절취물을 제3자(정을아는자)에게 **매각**(불벌)
- cf 절취물을 **자기 것인양** 매각해 금원취득(사기)
- cf 절취한 예금통장·도장으로 예금**인출**(사기)
- cf 절취한 전달표로 전달물을 **편취**(사기)
- ③ **횡령+사기(횡령만 성립)**
 임야처분을 위임받은 자가 거짓말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교부하지 않음(횡령죄만 성립)
- ④ **배임+사기(상상경합)**
 신탁전무가 담당직원 기망하여 부정대출받은(배임·사기·상상경합)
- ⑤ **사채유기죄의 성립여부**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살해하여 바다에 던짐○
 살해후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
 공동묘지에서 살해후 땅에 묻음○
- cf 살해후 은폐하려 화장하면서 장제례에 갖춤×
 인적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후 그냥 도주×
 cf 장제·감호의무 있는 자가 사체를 단순방치○

포괄일죄

- ① 폭행·협박하여 감금 - 감금일죄 (협박은 흡수)
 폭행·협박하여 강도, 강간 - 강도, 강간 일죄
 폭행만 따로 떼어 공소제기 → **공소기간판결**
 감금하여 강간 - 감금, 강간 상상경합
 감금만 따로 떼어 공소제기 → **유죄판결**

② 특가법상 **상습절도** 성립하면 주거침입 불성립
cf 특가법상 **누범** 성립시 주거 침입 **별도성립**

③ 상습 장물알선 장물취득(포괄일죄)
상습 특수절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포괄일죄)

cf 상습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실체경합)

cf 상습 흥기휴대폭력, 흥기없는폭력(실체경합)

④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감금 포괄일죄)
너물을 요구하여 수수(수뢰죄 포괄일죄)

⑤ 상해를 가하면서 흥기로 협박 ⇨ 상해죄
cf 협박한후 다시 주먹과 발로 상해(실체경합)

⑥ 은행 직원이 4년3개월간 공금횡령(포괄일죄)
금융직원이 수회 금품수수(배임수죄 포괄일죄)
1년 반 동안 수차례 너물받음(포괄일죄)
한사건 한번선서후 수회 위증(포괄일죄)

⑦ 같은기회에 여러개 영업비밀 취득(포괄일죄)
cf 영업비밀물 절취후 그 영업비밀사용(실체경합)

⑧ 신용카드 공갈죄 취득후 현금지급기 현금인출
(공갈죄 포괄일죄)
cf 통장 인장 공갈죄 취득후 은행원에 예금청구
(공갈,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실체경합)

⑨ 상습범 중간에 **동종** 상습범 확정판결 있으면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개의 죄로 나뉜다.
cf 포괄일죄인 개개범죄가 **이종** 범죄 확정판결전
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그죄는 확정판결 후인
최종 행위에 1개 죄로 완성된다.

cf 상습사기 중 일부를 **상습사기**로 판결확정되면
그전의 상습사기는 기판력 미치므로 면소사유
상습사기 중 일부를 **단순사기**로 판결확정되면
그전의 상습사기는 별도의 유죄판결 가능

상상적경합 · 실체적경합

§40 상상적경합: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37 동시경합범: 판결확정되지않은 수개의 죄
사후경합범: **급고이상** 판결확정된 죄와
(2004.1.20 시행)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 **법규명 · 역식명령**의 확정판결 전 · 후의 범죄
→ 동시경합범으로 1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甲이 **단순**사기로 판결**확정**된 후,
그 전 행위를 **상습**사기로 기소 - **유죄**판결○

① 절도, 강도, 준강도와 상해

- 같은 관리인 소유자 두명의 물건절취(일죄)
cf 주인집 절취후 셋방에서 절도미수(실체경합)
- cf 동일장소에서 동일방법으로 각기 점유하는
수인의 물건을 강취(실체경합)
- 3인이 **가폭**(부부)에게 금품강취(특수강도 일죄)
- 2인이 종업원 강도상해후 여관주인도 **같은 방**
에 밀어넣고 강도(강도상해·특수강도·상상경합)
- 3인이 여관관리인 강도상해후 **각 객실**로 가서
투숙객들에게 강도(강도상해·특수강도·실체경합)
- 절도미수가 출동경관 丙을 폭행하고 丁을 상해
(丙준강도미수+丁강도상해 → **강도상해 포괄일죄**)
- 한번 강도에서 수명을 상해(**강도상해 실체경합**)

② 감금과 강간 · 강도

- 조개트럭에 17세女 태워 여관까지 강제 운행후
강간 시도했으나 미수(감금·강간미수·**상상**경합)
- 주점 종업원을 승용차에서 강도상해후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서 풀어줌(강도상해·감금·**실체**경합)

③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

- 절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준강도·공무집행방해·**상상**경합)
-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강도·공무집행방해·**실체**경합)

④ 수회 강간한 경우

- 강간후 200m 오다가 다시 강간(단순**일죄**)
- 강간치상후 1시간 뒤 장소옮겨 강간(**실체**경합)

⑤ 강도, 강간, 치상의 관계

- 강간후 강도(강간·강도·실체경합)
- 강도후 강간(강도강간 단순일죄)
- 강간중 강도하고 계속 강간(강도강간)
- 강도+ 강간미수+ 상치(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상상)

⑥ 연결과에 의한 상상적경합(판례)

공무원이 뇌물받고 허위공문서작성하여 비치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는 실체경합이나,
이와 상상경합인 수뢰후부정처사(가장중형)로 처벌

cf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후 뇌물받음
→ 허위공문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실체**경합

⑦ 업무방해죄 관련

P우유 사장이 소비자보호원 비방하는 허위 광고
(출판물명예훼손-업무방해·상상경합)

슈퍼에서 주인을 식칼로 협박하고 손님을 내쫓음
(협박·업무방해·실체경합)

cf 슈퍼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음 <기출지문>
(협박·업무방해·상상경합)

⑧ 교통사고 관련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이에 흡수된다.

- 사고로 차량손괴+ 승객상해-**상상**
- 무면허+ 술취하여(=음주) 운전-**상상**
- 사고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상-**상상**
-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미**조치**)-**상상**

cf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미**신고**)-실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실체경합

여러 날에 걸친 무면허운전-실체경합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관리법위반-실체경합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들 관계-실체경합

⑨ 마약관련 범죄

히로뽕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후 판매(실체경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후 공범자간 수수(실체경합)

수수한 마약을 투약후 잔량 은닉**소지**(실체경합)

마약 판매목적 **소지**후 매매미수(실체경합)

대마**절취**후 흡입목적으로 **소지**(실체경합)

cf 마약 수수죄에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불벌)

⑩ 기타의 경우

같은장소에서 반복 계불입금편취(사기)(**상상**경합)

유부남, 유부녀의 간통(\$241①전문.후문 **상상**경합)

연명문서(수인의 명의로 된 문서)의 위조(**상상**경합)

수개 위조문서의 일괄적인 행사(**상상**경합)

1개의 행위로 형법과 농지개혁법위반(**상상**경합)

회사대표가 공금횡령후 조세포탈(실체경합)

수회의 수출원재료 관세부정환급행위(실체경합)

수회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행위(실체경합)

사기와 방문판매법상의 금전거래(실체경합)

법인 사용인이 관세품을 절취 또는 강취로 취득

: 관세법위반과 절도죄 또는 강도죄(**상상**경합)

공무원에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금품 교부받음

: 변호사법위반과 사기죄(**상상**경합)

협박하여 법정 증개수수로 상한 초과금액을 받음

: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 공갈죄(**상상**경합)

건설회사 부장이 회사명의의 합의서 임의작성교부

: 사문서위조 행사와 업무상배임죄(**상상**경합)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후 미지급

: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업무상배임죄(**상상**경합)

사기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

: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죄(실체경합)

형 법 률

물 수 · 추 정

제48조 【물수의 대상과 추정】

- ① 【人】 범인이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
【物】 1. 범죄수단 2. 산출물 3. 대가물
②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③ 문서, 도화, 특수매체기록, 유가증권은 폐기

제49조 【물수의 부가성】

유죄재판 안할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cf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면 몰수·추정 할 수 없다

□ [원칙] 임의몰수 [배임수재, 뇌물] 필요몰수

□ 형법몰수: 보안처분(이익박탈) → 개별책임

특가범몰수: 징벌(형벌성격) → 연대책임

□ 범인, 공범, 필요적공범 소유물 - 몰수可

□ 사기도박에 제공하려면 금전 - 몰수可

절도범형 종료후 제공된 자동차 - 몰수可

□ 체포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한 금전

⇒ 장차 실행할 범죄에 제공하려는 물건○

그 이전에 범한 범죄에 제공하려는 물건×

주 형	선고	선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부가형	선고유예	선고	선고유예	선고
	不可	可	可	可

- 압수가 위법해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강도범의 처의 자동차는 몰수할 수 없다
- 범죄종료후 사용했어도 범죄에 기여했다면 몰수○
- 추정가액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뇌물 액수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정×
- 이자약정 없이 금원 차용한 경우 추정 대상은 차용금원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특별사면으로 징역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어도 추정까지 선고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금피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다면 국내도매가격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cf 금피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우리법원이
몰수할 수 없었다면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

형의 양정

제52조 【자수, 자백】

- ① 죄를 범한 후 자수 - 형의 임의적 감면
② 반의사불벌죄의 자백 - 전항과 같다.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 각특노법경작

① 자수 관련 판례

- 범행을 부인하거나 누우침이 없으면 → 자수×
- 자수 성립한 후 → 범행부인해도 자수효력유지
- 수개범죄 중 일부만 자수하면 그부분만 효력○
- 친자에게 전화로 자수의지 전달해도 자수×
-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수×(자백○)
- 범인의 자수는 대표자가 해야 한다 (직원×)
- 범행발각후, 지명수배후의 자진출로도 자수○
- 자수감경하지 않아도 위법 아니다(·임의감면)
-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혐의사실 인정한 경우 법정에서 조금 차이나는 진술해도 자수효력○

cf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범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면 ⇒ 자수효력×

② 형량 관련 판례

- 벌금 다액 1/2 감경(형법): 다액은 금액을 의미
형의 가중 - 상한, 다액만 가중
형의 감경 - 상한+하한, 다액+소액 모두 감경
- 결합범에서 무기징역 선택하여 작량감경한후에 또다시 결합·누범가중하여 15년 초과할수없다.
- 징역·벌금을 병과하면서 징역만 작량감경하고 벌금은 작량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cf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 (§38①③호) 징역만 작량감경하고 벌금은 작량감경하지 않아도 적법

- 징역·벌금을 병과하면서 징역만 집행유예하고 벌금은 집행유예하지 않아도 적법하다(§62②).

cf 하나의 형의 일부만 집행유예하면 위법하다.

③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벌원제량으로 산입하는 재정통산은 위헌(헌재)
⇒ 반드시 전부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누 범

제35조 【누범】

① 금고이상확정 + 집행중료·면제 + 3년내 + 금고이상 죄를 범한 자 → ② **장기 2배** 가중

- 전범, 후범 모두 금고이상 선고형량 (∴ 도박×)
- 일반사면, 가석방중, 집유중, 집유후 : 누범가중×
-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기간경과후 : 누범가중○
- 형의 **장기**의 **2배** 가중○, 형의 단기의 2배×
- **상습범** 일부가 누범시효에 시작- **전체**가 누범 **경합범** 일부를 누범시효에 행함- **그것만** 누범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이하 금고이상 형을 선고할 때 제51조정상 참작사유 있으면 1년-5년 집행유예 가능.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7.29 시행>

-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선고효력상실)**
 - ① 법적효력상실 - 형집행×, 누범**전과**×
 - ② 선고사실유지 - **사후경합범**의 **확정**판결○
- 선고유예 결정사유**로서의 자격정지이상 전과○
- **결격사유 (집행유예를 할수없음)**
 - ① 금고이상의 형 : 실형 + 집행유예(판례)
 - ② 결격기간 : 금고이상확정 - 종료면제후 3년
 - ③ **결격기간 내에 범한 범죄만** 결격사유이다.
- 결격기간 내에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에 판결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

□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시 부과)

시간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 금전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이행×
준법경영을 줌로 하는 강연과 기고명령×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 선고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취소사유 (집행유예 후에 결격사유를 발견)

집행유예 판결확정후 집유기간 경과전 발견○
집유판결전, 집유기간경과후 발견-집유취소×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7.29 시행>

□ 실효사유 (적법한 집행유예를 실효시킴)

- 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② 고의범에 대해
- ③ 실형이 확정되어야 →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
- ex 한 사건에 집행유예 선고되고 그유예기간중에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먼저의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 기타 관련 판례
 -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가능
 - 선고유예판결에서는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한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확정일이고, 이후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경합범관계의 죄에 두개 정역을 선고할 때 하나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시기를 다른 하나의 정역형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치료감호법

보호감호는 폐지되었으나, 치료감호는 존속한다.

□ 치료감호법의 주요내용

- ① 제법의 위형성 + 치료의 필요성 요건추가
- ② 심신장애 15년, 중독 2년으로 상한설정
- ③ 치료감호 청구시 전문의 진단 참고해야한다
- ④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감호 청구 가능

살인·낙태·과실치사상

□ 시기-진통(분만개시), 중기-■박종지(심장사)

□ 존속살해의 존속 - 법■살(判)(多)

영아살해의 존속 - 법■살(判) + 사실상(多)

□ 혼외자-생모·인지■문하고 존속살해)

생부(보통살인, 인지하면 존속살해)

cf 인지된 서지가 적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

cf 적자가 계모를 살해해도 보통살인

□ 입양-생모, 생부, 양모, 양부 모두 존속살해

□ 배우자 살해후 이어서 장모살해(존속살해)

□ 산모가 사생아인줄 알고 살해-영아살해
산모가 남편 아이인줄 알고 살해-보통살인

□ 죽을의사 없이 합의동사를 가장(위계살인)
정사를 합의한후 먼저 목졸라 죽임(승낙살인)
자살 결의케 한후 촉탁받아 살해(촉탁살인)
판단능력 없는 자와 합의동사(살인간접정범)
판단능력 있는 자와 합의동사(자살교사방조)
자살하는 처를 구하지 않음(부작위-자살방조)

자살종인 자를 살해-살인(자살방조×)

분만중 생명 사망시킴-업무상과실치사(사람○)

강제로 자연분만 시도하다 사망-무죄(사람×)
(규범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시기→사람×)

버려진 영아를 출생신고한 후 살인-존속살해
입양요건 갖추지 못한 자의 살인-보통살인

甲이 장모 丙을 乙로 오인 살해-보통살인(15①)

동거남이 자기 아이 살해-보통살인(영아살해×)

자살카페의 금원편취목적 청산업광고-자살방조×

기타 살인고의, 과실치사상 ⇒ 총론 참조

□ 낙태-추상위험범(모체 밖으로 ■출시 기수)

□ 甲(남편)은 乙(처)에 경제사정으로 낙태를 지시하여 丙(간호사)·丁(의사)에게 부탁하여 낙태
→ 甲(자기낙태교사) 乙(자기낙태) 丙(동의낙태)
丁(업무상동의낙태)

업무상동의낙태	한, 의, 조, 약	수익사×, 간호사×
허위진단서작성	한, 의, 조, 치	
업무상비밀누설	한의, 조약치, 변호, 변리, 공증, 대서, 성직	

상 해

실명-중상해○, 치아 탈락, **다리** 부러짐-상해

4시간30분 협박하다 얼굴 매리자 **기결**-상해○

cf 팔에 전치1주 **등전크기의 멍**-상해×

(상처경미 + 일상지장없고 + **자연치유**-상해×)

cf 강간으로 인한 **반상출혈상** - 강간치상×

cf 강제로 옷 벗기고 **음모** 깎음-강제추행(치상×)

폭 행

	폭행의 정도
최광	일체 유형력 :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
광의	사람 : 공무방해 특수도주 공갈 강요
협의	사람 신체 : (존속·외국원수·사절) 폭행 (존)강도(반항 불능) 강간(면저곤란) 정유강취 강제추행(반항곤란, 의사반)
최협	

	협박의 정도
광의	일반적으로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 공포심느낄정도 업박죄의 협박(判)
협의	현실적으로 공포심느낄정도 각종 협박(다) 공갈 강요
최협	반항억압 등 폭행정도와 동일

	정신병자	술취한자	장든자	영 아
협박객체	×	×	×	×
감금객체	○	○	○	×
영애주체	○	○	○	○

“표절가수·가만안둔다”(전화+녹음)-협박○폭행×

[근접] 폭언 또는 욕설+손발휘둘러 물건던짐-폭행○

[전화] 폭행×, 청각기관 자극하여 고통주면 폭행○

□ **단체다중 위력보여** - 현장不要, 실존要

□ **위험한물건** - 성질 + 사용방법으로 판단

□ **휴대하여** - 행위자인식要, 피해자인식不要

승용차○ 농약·당구큐대○ (특수폭행)

권투선수의 주먹(신체일부)× 청산원 편지동봉×

쇠파이프에 대항한 각목× 당구공으로 머리톡톡×

훈계하며 칼자루로 머리 침×

협 박

① 조상친도를 이유로 금품획득 - 협박×→공갈×
현재지변:길흉화복의 고지 - 협박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상**지배**한다고 믿게해야만 협박○

② **제3자**를 이용한 협박
 제3자를 지배한다는 행동 or 피해자의 인식 요

③ 협박죄의 보호정도 (추상적 위험범) 2007전합
 해악고지+ 도달+ **인식**<기수> (공포심不要)
 cf 도달안되었거나, 도달해도 인식못하면 - 미수
 cf 해악고지를 인식 못했으면 공포심 가졌어도 미수

남편과 불륜 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협박×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다-협박×(정당행위)

가위로 목을 찌를 듯한 태도-(특수)협박○

→ 말이 아닌 거동을 통한 협박도可

고무줄 바르고 라이타 켜는 동작-(특수)협박○

→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 不要

빈궁기충 겨누고 차에 실탄 보관-특수협박○

강 요

□ 강요된행위-절대.물리폭력×, 상대.강제폭력○

강요죄 -절대.물리폭력○,상대.강제폭력○

□ 인질강요죄 성립하면 약취유인죄는 흡수된다

□ 해방강경-자의성不要, 기수.상해후에도可

□ 자가용 강제 운전케 함 - 강요죄

택시를 강제 운전케 함 - 강도죄

	실행착수	인질에대한범죄	해방강경
인질강요	강요행위	인질강요×	규정○
인질강도	금품요구	인질강도○	규정×

협박하여 의무 없는 진술서 쓰게 함-강요○

대통령 친인척행세하며 여권 교부케 함-강요○

컨트리클럽회원들에게 재산상불이익을 고지하면서
 기존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제한-박탈-강요○

편미타형 의무 있다고 믿고 협박-강요× (협박○)

유기·학대·아동학사

유기	요부조자 + 범음.계약 보호의무 + 유기
학대	피감호자 + 보호.감독의무 + 학대
아동학사	16세미만 + 위험업무자에 인도

쌍백지서 **경찰**이 지서 운반된 자를 방치-유기○

술집주인이 손님들 노상에 방치 동사-유기치사

우연한 **동행**인의 방치로 사망-유기×(의무×)

여호와증인 **수혈거부** 사망-유기치사(살인×)

강간지상범이 실신한 부녀를 방치-유기×(의무×)

(살인, 상해, 강간지상○ → 유기×)

甲 모르게 乙女 뛰여 중상후 방치-유기×(고의×)

4세아들 대소변 못가려 담장 가두고 구타-**학대**○

12세친딸 간음 처녀막과열-미·의·강·치상(**학대**×)

(반인륜적 침해로 부족, 유기에 준할 정도 要)

(**음란**행위, **폭행**협박 - 학대×, 가혹행위○)

약종상이 독살혐의 피하러 의사 부르지 않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사망-유기(치사×)

약취·유인

1순위	국외이송목적	
2순위	영리, 간음, 추행, 결혼목적	
3순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 보호법익 : 미성년자 자유 + 보호자 **감독권**

□ (의조부 양육에 대해) **친권자**도 범죄주체可

□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 不要

부모출입봉쇄, 부모만을 강제되거→미성년약취○

cf **강도범행** 과정에서 부모 일시매제→미성년약취×

유인해서 주의일(검팔이)시킴-미성년자유인죄

미성년자의 동의 얻어서 약취-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의 능능아를 유인-미성년자유인죄(약취×)

유인 공모후 甲 모르는데 乙이 유인-공동정범○

미성년女 사창가에 팔려고 약취-영리목적약취죄

cf 母에게서 격리시킬 필요있어 인도 거절-무죄

18세女 스키장 간다고 유인하여 팔-부녀매매죄

체포·감금

- 약취·유인+ 체포·감금-**실체**적경합
- 폭행·협박+ 체포·감금-체포·감금만 성립
- 감금+강도·강간-**상상**적경합(**법외**성립)
- 정신병자 감호후 출입문 시정-감금×(정당행위)
-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후 시정-감금×(정당행위)
- 조폭에 대한 **공포감**으로 도피를 단념-감금○
- 여관에 감금하였으나 술 마시러 출입可-감금○
- 감금한 뒤 폭행하거나 옷을 벗김-중감금
- 달리는 차 문 잠겼으나 뛰어내려 사망-감금치사
- 술집문가게 가둬 머리깎자 뛰어사망-중감금치사

강간·추행

	13미만	13~20	20세이상
폭행협박	강간	강간	강간
위계위력	미·의·강	미·간음	피강호부녀간음
동의없음	미·의·강	무 죄	피구금부녀간음

준강간·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용
준강도·점유강취	탈환한거, 체포면탈, 죄적인열목적
준사기	미성년자 지려천박, 심신장애 이용

- ① **성전환**수술 받은 자를 간음-강제추행(강간×)
법률상 **처**를 강간-강간×, 폭행협박.강요○
혼인관계 파탄 ⇒ 처에 대한 강간○(2009)
- ② “한명하고 할래? **여러명**하고 할래?”-강간
새벽女에게 **배란**으로 침입하려함-강간미수
• 술취한채 **내연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팬티를 벗기려 함-강간미수
(반항불능근란케할 정도○, 실제 반항불능근란×)
- **노래방 도우미** 강간당할 때 적극반항없음○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어도 항거관련○)

- ③ 사촌여동생 강간고의 **가슴**만지다 도망(강간×)
여관에서 **창피**해서 구조요청 안함-무죄
“**재청방**이니 장소를 옮겨서 하자”-무죄
“**한번만** 하게 해달라”고 하여 오휴춤-무죄
잠자다 “**■꺼**, 그냥빨리해”-무죄(준강간치상×)
- ④ 채팅으로 여고생에게 “**■주**겠다” 성교-무죄
정신지체女 “**남자**소개해준다”며 성교-무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필요하다.
cf 혼빙간, 위계간음 - 간음행위 이외의 오인유발○
간음 당시 혼인의사 있었다면 변심해도 혼빙간×
- ⑤ 7-8세 지능 정신지체장애 ⇒ 심신미약간음○
평소 따르던 남친 아버지 “애기야 안겨봐라”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위력 = 폭행협박 + 행위자의 지위·권세이용○)
- ⑥ 상사가 여직원 어깨 주무름 - 강제추행○
껴안고 부루스, 협박으로 러브샷 -강제추행○
찜질방에서 가슴만짐 -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등학생 **건강검진** 중 가슴만짐 - 추행○
소속 중대원 껌꼭지 비틀면 - 추행×
- ⑦ 준비한 칼을 사용하지 않고 강간-특수강간○
(행위자만 인식하면 되고, 피해자는 인식 不要)
- ⑧ 강간중에 살인고의로 살해-강간살인죄
강간치상 후에 살인고의로 살해-**실체**적경합
(ex 범행은 오휴하려고, 책임지라는 말에)
- ⑨ 비골 골절 상해 가한 다음 추행-강제추행**치상**
- ⑩ 미장원주인 남편이 종업원 간음-업무위력간음
직장상사, 의사진찰 중 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 신용훼손

307	명예훼손	공연 + 사실적시 ① 진실 ② 허위
308	사 자	공연 + 사실적시 × 허위
309	출판물	출판 + 비방목적 ① 진실 ② 허위
310	위법조각	307①(진실+공익) (출판+비방목적×)
311	모 욕	공연 + 모욕(사실적시×)
313	신용훼손	허위사실유포. 위계 ×
314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315	경매압찰	× 위계. 위력 기타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판례)
(허위사실)유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진실사실로 오인		허위사실로 오인	
진실 명예훼손(15①)		진실 명예훼손(포함)	
진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			
<위헌적> (多)불법(과실규정×), (判)위법성조각			
사자로 오인		생존자로 오인	
진실적시	무 죄		
허위적시	사자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사자	제310조
명예훼손	○	○	적용○ 반의사불벌죄
모 욕	×	×	적용× 친고죄

- ① 명예주체 - 여성 **3·19동지회**×, 소속**교사**○
(집합명칭의 특정인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 ② 다방에서 친구에게, 마을 입구에서 과부에게,
새마을 지도자에게, 여관방에서 딸·사위에게,
학교 이사장에게 진정서 제출 - 공연성×
· 명예주체 **본인에게 귀찮**로 전달-공연성×
cf 동네골목, 음식점에서 **동네**사람에게-공연성○
cf **전자게시판**, 개인블로그 **비방**에 **대화방**-○
cf 개별우송, 일면식 없는자, 4인에 순차유포-○
- ③ “신씨중중 어떤분자 **황령**”-중중원명예훼손○
넌이 **신고**해 경찰서 다녀왔다-명예훼손×
cf 선거범죄 제보자를 당원에게 알림-명예훼손○
-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고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고 알려지면 可
But 이 사안은 고발 동기나 경위를 언급안했다

- ④ **내일 구속영장** 떨어진다-명예훼손○
과거·현재 사실적시○, 장래 사실적시-원칙×
장래사실이 과거·현재사실을 기초로 하면○
- (주)**진로**가 지분넘어가서 일본기업이다 ×
가치중립적 표현도 사회평가 저하로 명예훼손可
But 이 사안은 사회평가 저하 없음
-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예훼손 ×
- ⑤ 사망을 알면서 허위사실유포-사자명예훼손죄
- ⑥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출판물×
모조지에 싸인펜, 최고서 사본-출판물×
- ⑦ 출명-간접정보 : **기자**에게 제보하여 **보도**될것
· 국회의원에게 M사 명예훼손 + 기자들에 공개
되어 신문에 기사 게재됨-명예훼손○ (출·형×)
· 기자에 허위제보했으나 보도안됨-공연성×(무죄)
· 진실을 신문기사로 게재해 함-무죄(310조)
진실+공익목적=비방목적× → 307조① → 310조○
- ⑧ 충신대 채플에서 (**이단종**의 **이단**)-명예훼손×
단체**협상**에서 **양보** 얻어내기 위함-○(위법○)
인터넷 **국회의원 권한 시**(하품만 하는년)-○
인터넷 연예인(**지고지순**이 뭘지 아니?)-○
- ⑨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모욕×
시청자의견란에 교사를 비방-모욕×(정당행위)
- ⑩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다-신용훼손○
점포 물건값이 유달리 비싸다-신용훼손×
계주는 과부로서 도와줄 사람없다-신용훼손×

업무방해

□ **업무**- 사회○, 1회성+ 계속의사○, 위법업무○

업무과실 ○락○ 보호가치無○ 위험한정○ 공무○

업무방해 ○락× 보호가치無× 위험한정× 공무×

① **보호가치 없어 업무가 아닌 경우**

의사아닌자가 운영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폐업신고로 방해×
직무집행정지 가져분결정 받은자를 방해×
비정상적 **임원변경등기** 받은 자를 방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경작**을 방해×

② **1회적 사무의 경우**

건물 **조경공사**×
주주의 **의결권**행사×, 중증 회장 **의사전행**○
공장이전×, (본래업무와 **밀접** or **계속성** - ○)
경비원의 일시 유인물배부 + **상사의 명** - ○

③ 편입학 업무자 : 대학×, **총장**+ 처장○, 교수×
성적평가 업무자 : 대학×, 총장+ 처장×, **교수**○
cf 사장과 채용담당자가 공모하여 부정채용-×

④ 임대인이 **무단전차인**의 영업방해-업무방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경과한** 임차인 방해○
(위법업무도 보호가치 있으면 업무방해 객체○)

⑤ 허위답변 연습시켜 **미국비자** 받음-업무방해
(충분한 심사를 해도 허위임을 발견 못하면○)

⑥ P우유가 **소비자보호원** 비방-출명+ (허위유포)
소방사업부 정리한다며 사표받음-(허위유포)
번호사 **무죄약속** 환까운이고 배회-(허위유포)

- ⑦ 주식매각사 선정시 **평가표 수정**.제출-(위계)
서류제출도장 안에 비방인쇄물 넣음-(위계)
총장이 **허위사무부**를 입학담당에 제출-(위계)
석사학위의 **논문대작**을 의뢰-(위계)
한도우미 프로그램으로 포커머니 이전-(위계)
금융사 직원이 실명계좌처럼 **원장조작**-(위계)
cf 비실명예금을 명의대여자 **실명으로 전환**×
타인명의 이력서로 위장취업-(위계)
cf 자기명의 이력서로 위장취업× (신정아사건)
cf 전임대표가 **허위재권 주장**하며 인장인도거절×
- ⑧ **대출금독촉** 전화로 업무방해위협-(위력)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음-(위력)
임의로 미술학원 **폐원신고**-(위력)
cf **74세** 노인이 혼자서 측량반대-무죄(위력×)
- ⑨ 사립대학교수가 **시험문제**를 유출-업무방해○
cf 고교교사가 **예상문제**를 제출전에 유출-무죄
- ⑩ 시장번영회에서 권한 없이 단전조치-업무방해
cf 관리비 고액 체납자에게 단전조치-무죄
cf 백작점에서 화재위험 때문에 단전조치-무죄
cf 기간만료후 보증금도 없어서 단전조치-무죄
- ⑪ 허위 클릭정보 전송하여 실제로 통계반영○
(정보처리 장애 있으면 업무방해 결과 不要)
전보후 무단으로 **아디.비변변경**-컴업무방해○
cf 전보후 후임에게 **비변 안알려줌**-컴업무방해×
- ⑫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행패
⇒ 업무방해× (∵공무는 업무방해의 업무×)
공무집행방해× (∵위력은 폭행의 정도×)

입찰·경매방해

- 실질은 단독입찰이나 경쟁입찰 가장-입찰방해
cf **수의계약, 입찰이 없는 경우** - 입찰방해죄×
- cf 입찰자 **일부와 담합**(전체 담합×)-무죄
→ But 입찰**과정 해탈 정도**라면 입찰방해可
- 입찰가격을 공모하여 낙찰됐으나 입찰시행자에
유리하고 담합자간 금품수수 없었음-입찰방해
(가액 공정성 외에 **경쟁방법** 공정성도 보호법익)

비밀침해

316①	봉함, 장치	개봉
316②	봉함, 장치, 특수매체	기술수단+ 내용지득

- 현금등보통, 기념사진, 우편엽서, 불빛투시×
아들과 동생이인의 우편물 개봉-비밀침해 기수

주거침입

- 주거 - 외출중○, **위요지**○, 화장실**용변간**○
골리앗크레인○,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소독시설(독립건조물)○, 물탱크시설×
- 상가건물 열린 문으로 공용계단.복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계단.복도○
- 시정장치 부수거나 문을 여는 행위로 착수○
(착수는 신체침입 不要, 기수는 신체침입 要)
출입문 단거봄(착수○) **초안종** 눌러봄(착수×)
배란다 매달림(착수○) **가스배관** 매달림(착수×)
- **권한있는** 주지가 정당절차 없이 경내침입-○
무요인 경락허가결정에 소유자가 무단침입-○
소유권 **분쟁종인** 건물에 승낙없이 들어감-○
임대차기간 종료후 **집주인**이 무단출입-○
(적법한 거주 개시후 불법점유되어도 보호객체○)
cf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무단출입-×

- 주침 판결**확정** 이후 행위 - 별도 주거침입○
출입방해금지 가치분결정후 농아원 강제진입○
cf 승소판결에 기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감×
cf 임대인에 정미소 인도집행후 임차인이 출입×
- (범지목적 출입- 判 주거침입○, 多 주거침입×)
· 남편 간통현장 촬영하려 상간자 주거침입-○
· **간통**목적 남편허락없이 들어감-주거침입○
· 시험 **대리응시**위해 관리자 승낙받아 들어감-○
· 음식점에 **도청기** 설치목적으로 들어감-○
· 무상출입 이웃에 **절도**목적으로 들어감-○
cf 승낙출입 이후에 절도의 고의가 생김-×
- 조그만 창문으로 **업글만 침입**-주거침입 기수
(判) 일부침입고의○, (多) 전부침입고의×-무죄
cf 대문으로 들어와 창문 엿봄-주거침입 기수
- **해고**된자가 회사를 힘으로 밀고 들어옴-○
해고를 **다투는**자가 노조사무실 들어감-×
해고를 다투는자가 **회시금지**한곳 들어감-○
직장 **불법폐쇄**후 근로자가 사무실등 출입-×
(적법한) **직장폐쇄**후 근로자가 퇴거불응-○
퇴거에 응하여 나가면서 **가재도구 남겨둠**-×
- 교회**출입금지**의결을 받은자가 퇴거불응-○
□ 특수주침(총기)- 직접 건물 들어간 범인 기준
□ 회사 사무실 뒤져 회계장부 찾음-**방실수색죄**

재산죄 기본이론

재물죄	영득죄	절도·횡령·장물
비영득죄	손괴·자동차등불법사용	
이득죄	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	
재물+이득죄	강도·사기·공갈	
절대금제품	(判) 재물○, (多) 재물×	
상대금제품	재물○ → 재산범죄 객체○	
부동산	절도× 감사공형배손○	
불법원인금여	횡령× 절감사공장손○	
동력의 재물성	장물 권행방: 규정× 준용○	
친족상도해	강도× 손괴× 강제집행면탈×	

□ 재물성 인정 여부

전파, 정보, 전화**통화**-재물×, 전기(관리可)-재물○

백지 자동차출고의뢰서, 심문기일소환장-재물○
cf 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3조각으로 찢은 어음 주위 조합-절도+ 위조○
컴퓨터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가져나옴-무죄
(정보절도×, 자기명의 문서절도×, 종이2장절도可)
cf 연구실 사원자격으로 복사한 문서 취거-절도

甲-리스트탑승권 부정발급+ 매도(절도+위조+행사)
乙-부정한 리스트탑승권을 매수(장물취득)
협박하여 매출전표 허위서명-강도○ (재산위협○)
점대부 성관계후 **와대** 때먹음 (화대에 대한 사기○)
나체소녀를 협박하여 **성교**-공갈× (재산이익×)

□ 피해자의 점유 인정 여부

• **출도**시킨뒤 손괴시계를 주워감-(폭행치상)+ 절도
• **강간 피해자**가 두고간 손가방 주움-(강간)+ 절도
• **당구장,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유실물 습득-절도
cf **고속버스, 지하철**에서 유실물 습득-점이행
cf 공용의 **저수지** 물을 자기 눈에 넣음-절도×

□ 공동점유 (대등관계, 상하관계) / 포장물

• 별거중인 남편의 돈레깅스에서 인장 꺼냄-절도
• 동업관계, 교회분열후 재물을 무단사용-절도
• 주인 없는 사이 종업원이 시계 취득-절도
cf 주인이 맡긴 가스대금을 종업원이 취득-횡령
• 종업원 혼자 있는데 손님이 시계 취득-절도
• 농협직원이 사대로 **쌀**을 약간량씩 발취-절도

□ 절도(소유자감시○) / 횡령(소유자감시×)

경리와 **동행**했는데 경리가 현금 바꿔치기-절도
열차사무소 취급수가 수탁화물 들고뒀-절도
cf **오토바이** 열쇠주며 인출시킨 돈 들고뒀-횡령
cf 평화시장 **지게집권**에 맡긴 짐을 들고뒀-횡령
cf **와물자** 운전수가 커피3상차 들고뒀-횡령

□ 사망, 실신한 피해자의 점유 인정여부

- ① A옥심내서 살인후 B취득-(A+B)**강도살인**
- ② 연쟁중 살인후 B취득-살인+(판)**절도**, (다)점이행
(판) 사자의 생전점유계속 인정, (다) 사자점유 부정
- ③ (강도)살인후 행인이 B취득-행인은 **점이행**
- ① A옥심내서 실신시키고 B취득-(A+B)강도상해
- ② 연쟁중 실신시키고 B취득-상해+절도
- ③ (강도)상해후 행인이 B취득-행인은 **절도**

□ 불법영득의사 : 「불법」, 「영득」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권취, 관취, 편취, 감취한 때				
(판) 수단불법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이득불법	무죄	폭행협박	무죄	폭행협박

소극	타인소유 영구 배제	cf 일시배제→사용절도
적극	자신 영구 일시 사용	cf 사용의사× → 손괴

- 카드 인장 신분증 사용후 반환(무죄), 통장(절도)
- 타인 차 사용후 반환(불영의×)→자동차불법사용○

□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경우

골프채로 살해후 **증거인멸하러** 지갑 꺼내 태움×
도장, 신용카드 꺼내어 사용한 후 **가져다** 뒀음×
나무라는 과정에서 **훔내주려고** 가방 들고 나옴×
사표제출후 **자신이 보관**하던 가방 들고 나옴×
자신을 찾아오라고 내연녀의 폐물을 가져옴×
전화번호 **알아두려고** 전화요금 영수증 가짐×
여자가 **도망못가게** 손가방 빼앗고 강간-강도×
강간후 돈 받은뒤 **털이라며** 다시 줌-강도×
소속 중대 M16**소총 부족하자** 1정 취거-절도×
cf 소속 강취후 **소대원들 감시**한 후 돌려줌-○
(소유자로서의 사용행위○→군용물특수강도죄)
cf **무일 변제할 의사**로 승낙없이 지갑 가져감-○

절 도

타인토지에 감나무 심은후 감을 따감-절도
타인토지에 심은 콩을 토지소유자가 망침-손괴
종업원 명의 영업허가증 주인 몰래 가져감-절도
금방에서 **귀금속** 구입할 것처럼 하여 도주-절도
결혼식장 **축의금** 점수인처럼 하여 도주-절도
책을 빌려 잠깐 보는 책 하다가 가져감-절도
cf 자전거 **시운전** 병자하여 타고 도주-사기

- 카페에서 **통장**을 들고 나오다가 적발-절도기수
- 승합차 시동못걸고 10m 전진후 적발-절도미수
- 승용차 시동걸고 200m 가다가 적발-절도기수
- 야간에 들어가려 **출입문** 당겨봄-야주절 착수○
cf 야간에 남의집 초인종 눌러봄-야주절 착수×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없이 차 가져감-절도
cf 지입회사가 차주 승낙없이 차 가져감-권행방
점원초청으로 주점서 맥주 마심-절도(주인의사외)
분묘간수 산지기가 석등,문판석 반출-절도(횡령×)
중기 소유권유보자가 등록명의자로부터 취거-절도
10년간 섬을 떠난 자의 발전기를 취거-절도×
- 임차인 퇴거시 남겨놓은 냉장고 전기사용-절도×
- 양식어업장의 자연서식 바지락을 채취-절도×
- 입목(영산홍)을 캐낸 후에 가담한 자-절도 공동×
- 삼촌차 돌려줄 생각으로 타다 적발-차별법사용
cf 타인 오토바이 타고 남이섬에 버리고 읊-절도

강도 · 준강도

- 야간 창살 침입후 헛기침에 놀라 도망-강도미수
- 야간 침입후 **동경** 살피다가 14세 강간-강도예비

3인이 **부부**를 협박하여 금품강취-특수강도 일죄
여러명에게 협박하여 금품강취-강도죄 상상경합
절도미수범이 A폭행+B폭행-준강도죄 **포괄일죄**
절도미수범이 A폭행+B상해-강도상해 **포괄일죄**
1회 강도기회에 수명을 상해-강도상해 **실체경합**

절도 + 기회 + 체포면탈 + 폭행협박 → 준강도

- ① 절도하려 칼 휴대하고 주택가 배회하다 검거
→ 준강도 목적만으로는 (준)강도예비×
- ② 절도 마친후 **10분 200m** 버스정류장-준강도×
- 절도 현장에서 체포됨-절도기회×-준강도×
- cf 절도가 체포됐으나 신병확보안됨-절도기회○
- ③ 절도가 폭행으로 채물강취-준강도×, 강도○
- ④ 강도, 준강도의 폭행협박-상대방 억압(최협의)
cf 절도가 피해자 폭행을 **술무경**으로 막음-절도
cf **날치기**가 가방 잡고 채가서 손가락골절-절도
→ 날치기가 5m **끌고가다가** 무릎까짐-강도상해
- ⑤ 절도기수가 체포면탈위해 폭행-준강도 **기수**
절도미수가 체포면탈위해 폭행-준강도 **미수**
- ⑥ 흥기없이 절도하다 체포면탈하러 **흥기로** 협박
→ (**특수**강도의 준강도)
흥기소지후 절도하다 **흥기없이** 체포면탈 폭행
→ (**단순**강도의 준강도)

특수절도 1인의 준강도 → 공범도 준강도○

- ex 절도 착수후 甲, 乙 모두 현장에서 발각되어
乙이 체포면탈 폭행-甲, 乙 모두 준강도○
- ex 절도범 甲, 乙 발각되어 다른길로 도주하다가
乙이 체포면탈 폭행-甲, 乙 모두 준강도○
- cf 절도 착수후 甲은 도주, 乙은 **담배청구** 걸러
체포면탈 폭행-甲(특수절도), 乙(준강도상해)
- cf 절도 공모후 甲은 체포됨, 乙은 1km도망가서
몽둥이로 폭행-甲(특수절도), 乙(준강도상해)

(준)강도 1인의 상해 → 공범도 강도상해○

- ex 강도 착수후 甲이 담배사러 간 사이에
乙이 고의상해-甲, 乙 강도상해 공동정범

(준)강도 1인의 살인 → 공범은 강도치사○

- ex 노상강도 중 甲은 차 안에서 망보는데
乙이 고의살인(강도살인) - 甲 **강도치사(判, 多)**
- cf 강도 공모후 전원 **과도 심피자** 휴대했는데
乙이 고의살인 - 甲, 乙 강도살인 공동정범

- **채무면탈 살인후** 이어서 돈을 꺼내간 경우
 · 택시요금 면하려 살해하고 돈 꺼내감-강도살인
 · 술값 4만원 면하려 살해하고 7만원 꺼내감
 ⇒ 11만원 **강도살인**○(상속인이 모름)
 cf 채무면탈 살인후 15시간후 절취 (**강도살인**×)
 (사망자 처가 채권존재 알고있음 → 단순살인○)
 cf **보험금 타려고 살해** → **강도살인**×, 단순살인○
 □ **주점도우미 상해후** **금품취득** ⇒ **상해와 절도**
 (상해와 금품취득간에 인과관계× ⇒강도상해×)

사 기

- 보험회사 기망해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받음×
 甲, 乙 **서로 용통어**를 발행후 부도처리됨×
 cf 용통어음을 **진성어음처럼** 속이고 대출○
 보조금 신청하려고 대포피해 허위신고×
 장애인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허위신고×
 cf 허위 보험사고내고 보험금신청-사기착수○
 □ **재산상 이익**
 대가 지급했어도 교부받은 전체에 대한 사기
 냉동오징어 구입후 다름있는채권으로 상계○
 무작위 문자메세지로 정보이용료를 부과○
 채무면제, 변제기유예도 재산상이익 취득○
 cf 부채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재산상이익×
 cf 위조된 약속어음을 채무변제로 교부×
 cf 채무면탈하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
 □ **(대출시) 용도사기**
 용도기망+변제력 없음 ⇒ 사기○
 충분한 (물적)담보×, 연대보증(인적담보)○
 대출용도한정(창업, 농지구입, 임야매수)○
 cf 기망하여 어음할인시 충분담보제공 ⇒ 사기○
 cf 금전차용후 경제사정 변화로 변제안함-×
 cf 채권을 보증금전환후 임차인으로 실제거주-×
 □ **장부상오로만** 제투자 ⇒ **편취액**에 포함×
 현실수령금으로 제투자 ⇒ **편취액**에 포함○

- **무전취식, 무전속박** (목시적 기망)
 돈있는줄 알고 식사후 돈없음 알게됨-무죄
 병원치료후 돈없어서 극장간다고 도주-**무죄**
 □ **잔전사기** (부작위 기망)
 잔돈 과다지급 알고도 고지않고 취득-**사기**
 잔돈 취득후 과다지급 알게됨-**절이행**
 □ **과장광고 - 구체적 기망 + 신의칙에 반할 것**
 고향**한우**마를 광고선전 10개 부착-사기
 가공일자 지난뒤 **바코드**라벨 재부착-사기
 신상품을 기존제품 할인판매로 **변칙세일**-사기
 녹동달오리골드를 **목요약**으로 허위광고-사기
 TV홈쇼핑에서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광고-사기
 오랜 전통의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광고-사기
 cf 아파트 분양 **평형**수치를 다소 과장-사기×
 □ **문서내용 알리지 않고 처분행위 유발한 경우**
 ex 문맹자에 10가마의 **백미보관증**을 100가마로 속임
 무죄(처분행위 없어 사기×, 자기명의 문서 위조×)
 ex **더 좋은 땅으로 교환**해준다고 속여서 서류받아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사문서위조 (사기×)
 ex **형질변경**-건축허가에 필요하다 속여서 서류받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사문서위조 (사기×)
 □ **재물을 사실상지배할 수 있으면 사기 기수**
 · 도자기 5천개 주문후 일부 배달하고 나머지도
배달가능상태 - 5천개 전부에 대한 사기 기수
 · 乙女가 甲의 말에 속아서 돈을 **송금**한후 甲을
 의심하여 다시 인출- 송금한때 이미 사기 기수
 □ **삼각사기**
 ①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동일인 아니어도 된다
 ②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어도 되나, **사실상** 지위는 있어야 한다.
 ex **법원** 기망하여 확정판결○, **등기서류**보관자○
 cf 등기공무원 기망하여 자기명의로 등기×
 특허청공무원 기망하여 자신을 특허출원자로×

□ 소송사기

사망자 · **공모자**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판결×

가압류·가처분×, **기한미도래**채권-지급명령신청×

cf 허위채권으로 법원 기망하여 **지급명령**신청-착수○

cf 허위채권으로 법원 기망하여 **전부명령**받음-기수○

① 피고인 범행인정 or 소송상주장 명백히 거짓 or 증거조작 경우에만 소송사기 인정된다.

cf 일방적 권리주장× 불리한 증거 미제출×

② 착수-원고(소제기사), **피고**(허위답변서제출시) 기수-(승소)판결**확정**시(패소판결확정되면 미수)
cf 재판외- 부동산 등기, 인도시 기수 (등기서류×)

③ 수표 허위 분실사유로 공시최고 신청하고 법원의 **재권판결**받아 수표채무 면함-사기○

④ 약속어음의 **원인관계 소멸**했는데도 공정증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함 - 사기○

⑤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고도** 확정판결 정본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

⑥ 실제 법률관계와 불일치하는 **재산상 화해**-×
허위채권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소유자라고 허위주장하며 **보존등기의 말소**청구○
But **예고등기로 경매가격 하락을 의도**하였다면×

前소유자가 허위주장하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권한 없는 자가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권한 없는 자가 소유권의 확인청구-×

공모자 상대로 제소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

피고됨을 회유하여 적극적 방어행위를 방해○

소송사기에서 소장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 컴퓨터사용사기

인터넷에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사용자 결제○
(**권한없이** 진실정보 입력 + **재산이익** 취득)

타인통장에서 불법 **계좌이체, 무지원송금** 방식○
위임받은 **권한 초과**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인출○
타인명의 모용 카드로 **전화ARS, 인터넷** 대출○

□ 개발사업 미리 알았거나, 사업추진토록 하거나
피해자 구박에 적극원인제공 ⇨ 부당이득죄○

□ 여신전문금융법 주요내용

①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본래 용도는

결제, 현금서비스이다 (현금카드×, 현금인출×)

② 부정사용죄-위조, 변조, 위조변조된 것을 사용
본질, 절취, 강취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③ 매출전표 작성·교부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에
해당하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

④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ex 매출전표 작성하다가 검거-불발(신·부 미수×)

□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① 물품구입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사기죄

(가맹점이 피기망자+피해자)

②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현금절도

③ 현금인출 :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사용사기죄×)

ex 타인카드 절취하여 7개 가맹점 물품구입

→ 신용카드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포괄일죄**

7개 사기죄 **실체경합** (총 9개 범죄 실체경합)

ex 무전취식하고 타인카드 제시하다가 검거
→ 사기기수○,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수×)

□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

① 신용카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 성립○

카드 사용후 반환 → 불벌(불법영득의사×)

②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허위작성하여 자금유통
→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③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받아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현금인출 → 사기죄 포괄일죄
(카드회사가 피기망자+피해자)

④ 타인카드를 편취·갈취하여 물품구입 등 사용
→ **사기죄 포괄일죄** · **공갈죄 포괄일죄**

⑤ 타인카드를 절취·강취하여 물품구입 등 사용
→ **절도·강도** + **각 사용에 따른 별개 범죄 성립**

⑥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ARS, 인터넷 대출 → **컴퓨터사용사기**
현금지급기에서 인출 → **현금에 대한 절도**

공 갈

- 상해를 수단으로 공갈 - 공갈+상해-상상경합
조폭행세하며 호텔 이용료 미지급-○
손해배상 행사하며 행패부림(정도초과)-○
공동묘지에 묻는다며 채권행사-공갈○(강도×)
교통사고 가해자에 신고한다며 거액 취득-○
남편의 정신병원 퇴원 조건으로 부동산이전-○
신문에 비판기사 보도할 태도보여 금품취득-○
나체소녀를 협박하여 성교- 무죄(재산이익×)
권한없이 소방도로 자칫세를 약정한 경우-×
예고등기 남겨둔 것같은 태도보여 금원요구-×
구청장에 진정하여 건물평수 부족 밝혀졌다-×
묘목고사 손해배상 행사 + 탁자 들었다났다-×
가출자 소제 알려주는 조건 + 보험가입 요구-×
안기부 직원이 변제 독촉하며 다소 위협적 말-×
정당한 권한 행사하며 폭행,협박 ⇨ 공갈○
권한 행사하며 부당한 금원요구 ⇨ 공갈○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 요구 ⇨ 공갈×

형 령

- 재물, 신뢰관계, 타인소유, 자기보관
cf 타인소유 광업권 처분-형령× (권리는 대상×)
 동업관계의 해사채취권 처분-형령× (배임○)
cf 신뢰없이 보관하던 재물 취득-점유이탈물형령○
cf 자기소유물-형령× (타인사무처리자는 배임可)
□ 조리상 위탁관계 인정
복권구입하여 4명이 끊은 경우-공평배분 합의○
역수확인위해 가계수표 건네받아 안둘러줌-○
채권양도인이 변제받은 돈을 동생 빌려줌-○
손님과 거래하려 빌려간 다이아 반환거부-○
자기계좌에 들어온 타인돈을 소비-○ (점이형×)

□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보관자(=처분권한○)

- 부동산의 매도위임 · 아파트 팔아달라 부탁
 - 버스 처분권 위임 · 토지담보로 대출부탁
- cf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처분권한×)→ 형령주체×
cf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건물에 거주하다 처분×
 공용주차장 일부를 독점임대하고 임차료소비×
 (타인지분을 자기 것 인양 처분했으므로 사기○)
 (자신 단독명의로 되어있어 처분했다면 형령 可)

□ 동산→ 점유자가 보관자(=처분권한○)

□ 금전(가치로 평가) → 점유자 = 소유자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임의소비×(무죄)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낸 **지입료**×(무죄)
 - **역명조업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전×(무죄)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벌어들인 금전×(무죄)
 - **임시보증금**으로 회사에 지급한 금전×(무죄)
 - 채권담보로 발행한 **수표**의 소지인×(무죄)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명의자×(무죄)
- cf 계불입금을 징수한 계주-형령× (배임 可)

□ 금전 용도가 특정된 경우의 처분 - 형령○

- 환전 의뢰한 금전, 대신 전해달라는 금전,
토지 매입명목으로 교부한 금전 등 ○
미납공과금, 업무추진비, 화물취급 전용역 건설비
우수상인유치비,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비회계자금
정부출연금 등 엄격히 용도제한된 금전을 사용○
배서양도로 위탁 or 할인 위해 교부받은 어음○
cf 편취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 변제충당×

□ 예금계좌 명의신탁 → 계좌 명의자가 보관자

- 타인금전 보관하는 예금명의자의 처분-형령○
cf 회사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소비-형령×
□ 동업관계 탈퇴에서 남은 1인의 처분-형령×
 주식회사(유한회사) 1인주주(사원) 처분-○
□ 주식수를 주주명부에 **허위기재** - 형령×
 타인소유 주식 보관자가 **주식처분** - 형령○

□ **예산 항목유용- 횡령** × (cf 개인소비-횡령○)

위법목적 or 임의용도제한 → 횡령○

예비비를 관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
금고이사장이 할인금을 사무실운용에 사용-×
출장비를 교부받아서 사무실운용비로 사용-×
이사직무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변호사비용-×
이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변호사비용-○

□ **불법영득의사 관련 판례**

자전거 습득하여 보관을 선언-점유이탈횡령×
회사 비자금을 일반자금으로 **장부상 은닉**-×
법인세신고의 증가 피하러 자기 계좌 보관-×
대표이사가 회사돈으로 **자신의 채권에 변제**-×
급격한 **법인세증가 피하러** 개인통장에 예금-×
사찰 창건 주지가 보수 대신 **사찰재산** 소비-×
중증이사가 중증급원을 **고을이자**주는자 대여-×
연체된 월세 받을 때까지 보관물건 반환거부-×
토지의 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불러** 반환거부-×
법인 채무 변제후 교비회계자금으로 매공-×
보수 압류우려로 다른 근로자 임금으로 수령-×
상법상 **가장납입죄** → 횡령×, 배임×
cf 회사이사가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지원-○
cf 법인카드를 용도 아닌 관공비로 사용-배임○

□ 타인소유의 공장지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법상 담보제공행위가 무효-횡령○
(사법상 무효 or 소유권 침해 관계없이 횡령○)

cf 공장재단 구성한 기계를 다시 타인에 양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위반** 무효-횡령×

□ **불법원인금여**- 횡령× (소유권자는 반환청구×)

ex 조합이 너물로 주라는 금전을 조합장이 소비
⇒ 조합장의 소유 ⇒ 횡령×
cf 윤락녀보다 불법이 큰 포주의 반환거부-○
cf 의약품 공급받는 대가로 받은 기부금 소비○
(불법원인금여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

□ **횡령죄의 기수시기 → 표현설**(다.판)

조요세트 계약 체결후 깔깔이 제작의도 표현

□ 제1횡령물을 제2횡령하면 - 불가벌사후행위

cf 신탁부동산 **일부**의 보상금을 소비 + 나머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 - 2개의 횡령 결합범

□ **각종담보, 할부매매, 위탁판매의 경우**

① **변제기전**의 처분 (판례)

등 산	채무자 처분	채권자 처분
양도담보	배임	횡령
매도담보	횡령	배임

부동산	채무자 처분	채권자 처분
양도담보	배임	배임
매도담보	×	배임

② 변제기후 **담보권실행**으로 염가처분-무죄
처분하여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 소비-무죄
변제기후 변제(공탁)받았는데 처분하면 **배임**

③ **동산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취거 ⇒ 절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취거 ⇒ 권리행사방해

□ 할부판매 :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한 경우 - 매수인 처분시 횡령죄

□ 위탁매매 : 위탁물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 - 위탁판매인 소비시 횡령죄
cf **가액 특정**된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횡령×

□ 채권양도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안하고
채권자가 금전수령 - 사기×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 소비 - 횡령○

□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2자간 명의신탁(부동산등기or은행예금) - 횡령
3자간 명의신탁(**신탁자계약 + 수탁자등기**) - 횡령
계약명의신탁(**수탁자계약+등기**, 매도인선언)-무죄
cf 수탁자 처분(횡령) **알고도** 취득한 자 - 무죄
수탁자 처분에 **적극가담**한 자-횡령 공동정범
cf 면세혜택 위해 장에인명의로 자동차신탁
⇒ 실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면 절도

등기명의자인 **수탁자** 사망후 상속인 처분○(신회○)
→ 수탁자의 **상속인**에 바로 등기후 처분-×(신회×)

비능부가 신탁한 농지를 능부 수탁자가 처분-×
→ 농지매매**중명** 발급받게 되었는데도 처분-○

배임

□ 타인의 재산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자 (권한내에서 이익취득하고 타인에 손해)

낙찰계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배임○
cf 계가 깨졌다는 거짓말로 계금 미지급-배임○
cf 파계되었음을 숨기고 계금을 징수-사기○
호적상친모가 미성년자 상속재산 처분-배임○
조합 위원장이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배임○
종어 구두약정한 물건 임의처분-타인사무×(무죄)
수협 **총대**의 조합장선거 의견권-타인사무×(무죄)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 대가의 등기 미경료-×
사무소장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 어음발행-권한×

□ 타인재산사무처리 보조기관도-배임주체 可
이사회결의, 감독청허가 있어도-배임죄 可
계주(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지급안함)-○
불신임된 前조합장(장소안해 조합폐소)-○
S전자 직원(기업비밀 사외유출, 정보반출)-○
금융회사직원(부정대출, 지급보증, 외상거래)-○
夫가 처 승낙없이 혼외자 인지(호적상친모)-○

□ 회사경영권 보전목적 자금지원-○(회사위함×)
대학총장이 父를 명예총장으로 자금지원-○

□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저당 등)

① 1매수인에게서 **중도금**받으면 타인사무처리자
② 2매수인에게서 **중도금**받으면 배임죄실행착수
③ 2매수인에 **등기**(부동산, 인도(동산)하면 기수
cf 등기이전해줄 의사 없이 매매계약-사기
cf 타인에게 등기해주고 자기것인양 매매-사기
cf 1매수인에게 등기 - 2매수인에 대해서 무죄

□ **중고차** 매도인이 할부금 미납-타인사무×
철에게 재산증여후 등기않는자-등기의무×
제1매매 **무효** 취소한 후 제2매매-등기의무×
토지거래허가 받지않고 있는자-허가의무×
cf **농지매매**증명 받지 않고 이중매매 - 배임○
→ **비농부**에 증명없이 매도후 이중매매 - 배임×
cf 제3자 명의 부동산의 이중처분 - 배임○
부동산 사기 이후 이중매매 - 별도 배임○

□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① 동산 양도담보 제공자가 점유개정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점유개정**- 무죄
②甲이 乙에 동산양도담보후 丙에 이중양도담보후 **점유개정** - 무죄 (乙만이 적법한 담보권자)
③ 이중양도담보 제공후 매각 **현실인도** - 배임○
(乙의 담보권을 침해○, 丙의 담보권침해×)

□ 채권의 이중양도

· **임차권**의 이중양도- 배임× (‘의무×’)
· **송이채취권**의 이중양도- 배임× (‘의무×’)
· **토석채취권**의 이중매매- ○ (‘허가형력의무○’)
· 임대기간후 다방 **영업허가** 명의변경 거부- ○

□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원칙]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 배임×
[예외] 상환능력부족, 담보가치부실 ⇨ 배임○

□ 조합이사 수표할인하며 조합명의 배서-무죄
총회 승인없이 조합회원증 임의 발행-무죄
이사가 개인 차용증에 법인인감 날인-무죄
회사 선박을 비싸게 평가하여 대물변제-무죄
(이상 모두 본인에 손해 위험 없어서 무죄)

□ 불고후원회 적립금을 신도에게 부정대여-○
(손해위험초래 이후 전액 법인에 반환했어도 기수)
신용금고 대표가 실제로 예금입금이 없음에도
입금된듯이 통장발행-○ (신용금고 손해위험○)

□ 배임수재죄: 부정한청탁, 재물.이익 취득

①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면 - 배임수재죄×
② 배임수재죄 + 배임죄 = 실제적**경합범**
③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을 도모-부정청탁×
계약관계 유지하여 **기존권리 확보**-부정청탁×
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부정청탁×
cf 위장대출을 목인 선처해달라 - 부정청탁○
교수에게 편입학청탁+금원교부-× (업무자×)
KBO사무총장에 광고권자선정 청탁-부정청탁×
공짜공사부탁을 승낙하고 수의계약-이익취득×

장 물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 재물○, 권리(전화가입권)×, 권리화체증권○
배임·손괴·수뢰·도박×, 사기·도박·산림절도○
재산죄를 구성하는 불가벌사후행위로 취득○
수표와 금전(환전·예금), 금불상과 금괴○
대체장물(장물로 구입, 매각, 교환 등)×
장물로 전달잡힌 전당표, 장물문서 복사본×
- 횡령한 후에 정을 알면서 취득·장물취득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취득·장물취득(다.판)
명의수탁자의 처분을 알면서 취득·무죄
명의수탁자에 적극가담 취득·횡령 공동정범
- 계약시 몰랐어도 취득시 알았다면·장물취득○
- 장물임을 모르면서 보관 - 장물보관죄×
이후 장물임을 알고도 보관 - 장물보관죄○
다만 점유권한 있어서 계속보관·장물보관죄×
-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음·장물보관○(장물취득×)
-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장물운반죄○
cf 절취한 자동차의 뒷자리에 편승×
- 장물매매를 중개하고 전달하려다 체포
⇒ 장물알선죄 기수○
- 컴퓨터사용사기로 자신 예금액 증액한 후에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전·장물× (예금증
액은 이익○ 재물×, 예금인출은 새로운 범죄×)
- 택시운전사가 신분확인없이 운반·업무과실×
고물상, 금은방에서 신분확인하면·업무과실×
cf 19세 신분확인후 금반지 2번이나 매수○

손 괴

내용변경	자기명의문서	타인명의문서
자기소유	×	문서변조죄
타인소유	문서손괴죄	

- 새장부로 이기하다가 잘못된부분 찢음·고의×
고장난 공중전화기 신고하려고 떼어냄·고의×
말소등기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고의×
호젓한곳에 데려가려고 가방빼앗음·고의×
임의처분 약정대로 수확안한 쪽과 없음×
구덩이 파고 콘크리트조각 집어넣음×
가재도구에 비닐천 덮었으나 비로 침수×
영업방해하는 철조망 다른곳에 치움·고의×
cf 경계로서의 철조망 치위버림·손괴○(경계침범×)
cf 건물에 스프레이낙서○, 계란투척×
- 경계- 일시可, 합의要 (일방적으로 세운 경계×)
기존 승인 있으면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도○
· 기존 부역벽 그대로 둔채 **새답장** 설치×
· 기왕 담벽과 연결하여 **추가**로 담벽 설치×
· 건물신축하면서 **처마**가 타인토지 침범×
· **일방적**으로 세운 말뚝을 뽑아 제거함×
· 경계도면 파괴, 경계를 아는 노인 살해×

권리행사방해

- 인도청구권, 정지조건부권리○ (점유수반 不要)
- 자기소유 타인점유물을 취거, 은닉, 손괴
cf 담보로 제공한 자기물건을 **편취**하면-×
- 명의**신탁자** - 대외적 소유자× → 권행방×
- **수탁자** - 명의신탁 무효인때는 대외소유자×
 명의신탁 유효인때는 대외소유자○
- 임대차만료후 임대인이 마루뜯어감-권행방○
 무효인 경매로 경락받은자의 점유-보호가치○
 (점유 개시가 적법하면 이후 위법도 보호가치○)
- cf 임대차만료후 임차인 점유, 무단전차인 점유,
 무효 경매의 낙찰자 점유도 보호가치○
- cf 절도범인의 점유-보호가치×-권리행사방해×
- 지입**회사** 직원들이 차주의 차를 취거-권행방
- cf 지입**차주**가 회사 차를 취거-절도(∴회사소유)
- cf 대표이사였던자, 부사장 개인의 취거-절도죄
- cf 지입회사의 **지입료** 임의소비-무죄(∴자기소유)
- cf 타인명의로 등록된 담보제공차량 취거-무죄

강제집행면탈죄

① 강제집행상황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제기 + **기세**로 총분
18억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도나기 시작○

② 은닉 : 동산·권리○, 누구소유인지 모르게함○

ex 금전등록기 명의변경,母명의 제3자 이의의소
ex 부동산 :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③ 허위양도

허위양도 + 담보된 채무가 더 많다 - ○

허위양도 + 약간의 다른 재산 - 권행방○

허위양도 + 집행에 충분한 재산 - 권행방×

cf 근저당설정, 대물변제, 횡령× (∴진의양도)

cf **명의신탁 해지**후 다시 신탁× (∴정당권리행사)

cf 채무자가 (자신채권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cf 가압류 후에 취득한 **제3취득자**의 허위처분×

④ (허위채무부담 없이) 가등기만 경료-×

허위채무부담하면서 가등기 경료-○

건물명도청구를 면탈하려는 허위채무부담×

채권존재가 부정될때의 강제집행면탈행위×

⑤ 허위채무 부담하며 담보가등기설정후

가등기 양도하여 본등기 - 2개의 강집면○

⑥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 매도인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자이고,

매도인 악의이면 매도인이 소유자이다)

공 안

[범죄단체조직]

- 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임의적 감경.
- ② 병역, 납세의무 거부목적은 별도의 형벌 규정.

[다중불해산] 소요(=폭행, 협박, 손괴)의 목적 +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의 해산명령

[공무원자격사형]

공무원자격사형 + 사형한 그 직권을 행사

[폭발물사용] <국가적범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
미수규정○, 전시가중○, 과실규정×

[전시폭발물제조]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운반×)

[폭발성물건파괴] <사회적범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발생
미수규정○, 전시가중×, 과실규정○

[죄무유기] 정당한이유없이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권남용하여 의무없는일, 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

제판, 검찰, 경찰, 인신구속 직무자 또는 보조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

제판, 검찰, 경찰, 인신구속 직무자 또는 보조자가
형사피의자, 기타 사람에 폭행, 가혹한 행위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범죄수사 직무자, 감독자, 보조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

cf 법원은 주체× (영장발부법관○)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인, 입후보자, 입후보하려는자에 협박, 선거방해

- ☐ 소매치기공모, 어음사기공모-범죄단체조직×

자생적으로 조직한 사복청년회-×

- ☐ 사칭한 공무원과 다른 직권 행사-경범죄일문

방화 등

- ☐ 방화착수-점화시, 현주방화기수-독립연소(判)

자기건물방화기수-독립연소+ 공경위협발생

- ☐ 현주건물 일부인 우산만 태움-현주방화미수
집에 휘발유뿌리고 사람만 상쳐-현주방화치상
주위에 인가없고 벚단만 전소-일반물건방화×

쓰레기(무주물) 방화-**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 ☐ 수리방해-상수의 인수○, 하수·폐수의 배수×

- ☐ 교통방해-통로개설, **통행로**로 오래 이용○
통행 안하기로 **조정**성립된 후에 통행제한○
도로 전차선을 점거○, 편도 2차선 점거×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통행 일시방해×
일시 지름길, 농작물 경작하던 농토×

- ☐ 실행착수시 사람현존+사후대피-선박매몰기수
유조선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선박“파괴”×

통화·유가증권

- ☐ 외국통용 외국화폐 위조-처벌○ (세계주의)

외국**유통** 외국화폐 위조-처벌규정×

ex 스위스에서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 취득-무죄
미국에서 통용안되는 100만, 10만달러 취득-무죄

- ☐ 500원 짜야 500엔처럼 만듦-무죄(오신정도×)

- ☐ 위조된 물건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화	증권	문서	우표
유통에 놓아야 하는것	●	×	×	×
신용력 보이려 제시	×	○	○	○
정을 아는 자에 교부	●	●	×	×
(정을 알고) 취득죄	○	×	×	○
취득후 지정행사죄	○	×	×	×
복사행위가 위조인가	△	×	●	×

통화△ - 칼라복사는 위조○, 흑백복사는 위조×

행사를 공모한 자에게 교부 ⇨ 행사죄× (모두 공통)

위조한 유가증권을 복사하여 제출 - 행사죄×

위조한 문서를 복사하여 제출 - 행사죄○

- ☐ 사자·허무인 명의 위조도 범죄인가? (판례)

증 권	공문서	사문서	공인장	사인장
○	○	●	○	×

□ 유가증권: **복사**한 유가증권×

공증전자카드○, 후불식전자카드(KT카드)×

은행조업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할부구매전표, 리프트탑승권, 문방구어음용지○

어음, 주권, 회사채, 상품권, 복권, 영화관람권○

발행일자 없는 수표, 상법상 무효인 어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수하물상환증**×

예금통장, 정기예탁증서, 신발표, 휴대품보관증×

□ 위조: 명의인(어음발행인), 사진(신분증),

복권 당첨번호 변경, 백지어음 금액보충○

부진정어음○, 폐공증전자카드 사용가능계합○

유효기간 경과후 승차권 날짜변경○

□ 변조: 어음금액○, **부진정어음**을 변조×(무죄)

유효기간 경과하지 않은 승차권 날짜변경○

□ 자격모용: **전직후** or **정지된** 자격을 사용

□ 허위작성: 유가증권○, 공문서○

허위사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 명의자, 자격자 동인의 경우 범죄성립 여부

	유가증권	문서
위 조	×	×
자격모용	●	×

□ A회사, 마대표이사, 1억원내 구매권한 가정

乙, 「甲」 or 「A代甲」	위 조
乙, 권한위임 받았으나 권한초과	위 조
乙, 「A代乙」 (타인자격, 자기명의)	자격모용
甲, 「A代甲」 2억구매 (권한초과)	자격모용
甲, 「A代甲」 구매없이 1억어음발행	허위작성
甲, 「A代甲」 1천짜리를 1억에 구매	배 임

당좌거래명의 변경없이 前대표명의 수표발행-×

종래 사용하던 가명으로 가계수표발행-×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인장으로 발행-×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에게 주권발행-×

원인채무관계 없이 약속어음발행-×

당좌수표 발행했으나 예금계좌에 잔고없음-×

□ 당좌거래없거나 정지된자가 발행-허위작성○

위임받고 발행인명의에 자기인장-허위작성○

문서·인장

□ 접수일부인-문서○, 심지어문대조표-사문서×

국제운전면허증-사문서, 사진 바꾸면-위조

위조된 문서를 우송, 팩스 (+ 도달)- 행사죄○

모니터 화면 이미지-문서× (전송해도 행사×)

위조한 문서를 이미지 전송-위조문서행사○

□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후 수리행위

→ 허위**공문서**작성과 부정처사후수죄의 **실체경합**

□ **인감증명서** - 전체적 공적 증명부분(공문서)

사용용도란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부분(사문서)

□ **교원실태카드** - 교장이 직무상 작성(공문서)

교사의 개인적 전출 의사표시 부분(사문서)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경찰이 작성(공문서)

주취운전자의 진술자란(사문서)

cf 문서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 사서명위조죄

□ 고의로 법령 잘못 적용 (**건축허가**, **과세표준**)

허위사실 없는 한 허위공문서작성죄×

cf **준공가**, **폐기물처리** 적합통보서-허공작○

(관계법령상 단순 허가×, 사실 확인증명 기능○)

□ 문서내용을 **알리지** 않고 명의자의 기명날인

받으면 **위조 간접정범**○(사기×) - 사기죄참조

□ 사인甲이 **정을 모르는** 丙에게 허위작성케 함

→ 甲은 무죄 (허위작성 정범, 교사, 방조×)

(공무원 아닌 甲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可)

cf 사인甲이 **정을 아는** 丙에게 허위작성케 함

→ 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광의)공범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불성립)

□ 사인甲이 **보조공무원** 乙과 공모후 丙 결재받음

→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甲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보조공무원 乙이 丙의 **결재없이** 완성-위조죄

□ 램프 전자기록. 권한 있든 없든 위조죄○

前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 사무그르칠목적×

카페에 원로회의 반대입장을 가장: 목적×

□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 신분증, 타인의 운전면허증 행사○
타인명의로 자신이 발급받은 신분증 행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동업약정서, 현금보관증, 기각결정문-사용권한자 특정없어 무죄
타인 신분증으로 **가족동의** 가장해 가입신청하고
휴대폰받음-위조+ 행사+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 인장, 서명, 기호에 관한 죄

인장위조행사는 유가증권·문서 위조행사에 흡수
사서명 위조하여 명의자에 제시해도 - 행사○
다른 차량 번호판 떼어내서 부착하고 운행함
⇒ 공기로 **부정사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 **동행사**죄
군청의 철제극인이 타기된 소나무를 적치-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기부, 호적부, 화해조서, 합동법률사무소공중○
의사면허증, 영업허가증, 변호사등록증, 여권○
각종대장, 주민증,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증**×
허위신고당시 - 의사합치×, 실제관계부합×

- 사서증서 - 사문서
- 사서증서의 인증서(작성명의확인) - 공문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내용확인) - 공정증서(원본)

ex 가장 **혼인**○ 가장 **이혼**× **예고**등기× **중간생략**×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상속, 가장증여, 가장매매, 명의신탁 등)

- cf **토지거래허가** 잠탈목적 등기원인 증여로○
cf 부실기재로 즉시기수, 이후 **주연**해도 기수○
①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위임이나 대리 결의-×
교회분열후 반대교인 배제하여 소집 결의-○
중중총회의 **결의없이** 경료된 근저당 등기-○
중중대표자인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등기-○
② (등기이전 합의하고) 대리권없는 법무사 기망×
등기이전 **합의없이** 대리권없는 법무사 기망○
③ 1인 주주회사에서 절차없이 이사 **해임**기재-×
1인 주주회사에서 절차없이 이사 **사임**기재-○

성폭속·도박·복표·신앙

- 간통주체-생존한 **법**상 배우자 있는자
외국에서의 혼인○. 합의의요(간통+강간○)
유부남, 유부녀의 이중간통 - 상상적경합
- ① 합의이혼(**이혼의사** 명백한 합치)-중용○
cf 합의이혼이 과거 혼인중 간통 유서한 것은 아니다
- 제관이혼 확정전에 **이혼한다고 진술**-중용○
이혼합의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의견자**-○
제관이혼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중용×
합의이혼전 숙려기간중에 신청취하-중용×
이혼심판**청구**를 한 사실만으로는-중용×
반소 제기하며 이혼 못한다고 다뤄도-중용×
- ② 간통 알면서 **혼인의사** 지속 명백-유서○
상간자에게서 **합의각서**를 받음-유서○
유서해줄테니 자백하라-유서×
수년간 간통에 이의제기안함-유서×
간통고소 이후 동침한 사실만으로-유서×
- 음행매개죄-미성년이라면 음행상습있어도 ○
□ 남성용 자위기구-음란○, 여성용-음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음란한 물건×
- 연극공연 완전나체 성기노출-공연음란○
고속도로에서 알몸 성기노출-공연음란○
요구르트 시음회 알몸 퍼포먼스-공연음란○
영광이 들이밀며 “술 부어라”-공연음란×
- 내기골프-도박죄
인터넷 고스트매치 개최(+**적자**)-도박개장기수
실내낙시터 물고기 번호표로 상품-도박개장
시설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 가동-도박개장
cf 일부터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
- 광고복권(우연성+일부이익, 일부**손실**)-복표발매
□ 교회결의 무시한 목사설교 방해-예배방해○
교회문 잠금 교인들 출입방해-예배방해×
탈퇴한 교인들의 무단침입 찬송을 방해-×
- 제사음식 따로 차린 상을 따로 참-제사방해×
□ 분묘발굴 기수-(判)복토제거, (多)외부인지
사자 불명, 암매장된 분묘 - 분묘발굴○

내란·외환·국기·국교

[내란] <국가적범익> 구체적위협범
국토침탈, 국헌문란 목적 + 폭동 + 구별처벌
미수, 예비○, 자수특례○, 살인죄는 흡수됨

[소요] <사회적범익> 추상적위협범
목적범 아님 + 폭행, 협박, 손괴 + 동일처벌
미수, 예비×, 자수특례×, 살인죄는 상상적경합

[여적] 절대적 사형 (유일규정)

[간첩] ① 간첩, 간첩방조의 정범 ② 군사기밀누설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 명시적 보충관계

[국기국장모독] 대한민국 모욕목적, 손상, 제거, 오욕

[국기국장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 비방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모두 반의사불벌죄)

[외국의 국기국장모독]

외국 모욕목적 + 공용에 공하는 + 손상, 제거, 오욕

- 내란에 수반된 살인행위-내란죄만 성립
- 기밀탐지 **지형**으로 국내**잠입**-간첩착수○
국내에서 적국지령으로 군사기밀수집시작(착수○)
동지포섭 지령받고 국내잠입(간첩예비×착수×)
적국과 연락없이 군사기밀수집(편면간첩-예비○)
- 적국지령으로 기밀탐지, 수집-간첩기수
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判)포괄일죄
- 군사기밀을 **적국**적으로 탐지-간첩죄(98①)
직무상 알게된 군사기밀 누설-간첩죄(98②)
직무**관련없이** 안 군사기밀 누설-일반이적죄
- 간첩상륙 도움, 기밀탐지 도움-간첩방조죄
- 국기에 절절한 안되나 경의 표할수있다-무죄
- 외국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잡지 게재-무죄

공무원의 직무

- 직무-**고유**직무○ (고발등 부수직무×)
유기-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
(불성실·소홀한 수행, 훈방조치, 병가중×)
- ex 가측검사원 소 계류장 시정조치 없이 방치○
당직사관이 애인과 자고 인계없이 퇴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은닉 발견후 방치○
운행정지처분받은 차량번호판 **제고부**○(작위)
- cf 총기난동사고에 효과적 대응책 강구못함×
제소자 호송업무를 대강지시하여 집단도주×
일직사관이 근무장소에서 잠을 잔 경우×
범죄자 찾느라 외제답배 압수영장신청못함×
- 교통사고 수사안하고 + 보험직원의 수사요청
거부 → 직무유기 **1죄** (判-**계속범**으로 취급)
- 허공작, **범인**도피, **위계**공집방, **중거인**멸 등
작위범이 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불성립
- 어업허가 현장심사없이 결제 - **위계 공집방**
(허위사실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위계 공집방 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불성립)
- **농지**불법전용 목인하고 + 현장출장서 결제
- **직무유기** +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 실제경합
(불법목인을 은폐하는 수단 아니므로 **별개행위**○)
- 예비군불참 목인하고 참석한 것처럼 작성
도박사실 목인하고 발견못한 것처럼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 실제경합 (**직무유기**×)
(불법목인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허위내용을 작성)
- **공무상비밀누설**죄 (실질비밀성+요비닉성)
· 시험문제유출, 청사이전계획 유출-○
· 검찰간부가 수사팀의 **내부상황**을 유출-○
· 감사관이 기업 **비밀무 부동산** 실태 고발-×
· 검총이 내사결과보고서 **핵소핵사**후 소지-×

- **직권남용죄** (권한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강요)
 재정장관이 은행장에 부실기업에 대출강요○
 비서관이 대통령친척 회사와 계약을 강요○
 대검공안부장의 전화와 무관하게 조폐창통합×
 도청기설치후 발각되어 제거× (미수규정×)
 치안본부장이 국과수 과장에 메모요구×
 (일반권한 사항 **외**의 명령.요구는 직권남용×)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나** 활동 후원요청×
-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지 않아 방해결과×**
 정통부 장관이 평점되진 엘지텔레콤을 선정×
 포함시장이 특정회사가 입주추천서발급 거부×
- **피의사실공표-수사기관 + 영장발부범판○**.
 공판청구전○. 피의자승낙있어도 범죄○
- **불법체포감금-수사기관+ 범판○**. 직권남용
- **폭행+혹행위-수사기관+ 범판○**. 피의자폭행등
- **선거방해-검+경+군**. 선거인.입후보자 협박등

보물

- **알선수뢰 - 공무원○, 중재인×**
 사전수뢰(-될자), 사후수뢰(퇴직) - 청탁
 제3자뇌물제공, 배임수뢰 - 부정한 청탁
 cf 제3자뇌물취득 (=공무원의 중뢰물전달죄)
 부정처사후수뢰(전직후수뢰), 사후수뢰(퇴직후수뢰)
- **뇌물죄-수수, 공여, 약속, 요구, 공여표시 기수**
 (이상 모두 필요적 몰수·추징)
 배임수중재죄-수수, 공여만 기수, 나머지는 미수
 (현실로 수수·공여한 것만 필요적 몰수·추징)
- **뇌물-불확실 프리미엄, 투기사업기회+ 참여,**
 장기간 처분못하던 토지를 처분, 성관계○
- **선물-대가성×, 뇌물-대가성○**(→ 넓게 인정)
-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수뢰죄×)
 공판참여주사-양형감경×
 교육부 연구관-검정교과서 개편×
 경찰청 정보과-외국산업연수생 관리업체 선정×

□ 몰수, 추징의 대상과 액수

- ① 수뢰한 돈을 **소비**, 은행**예금**후 반환-수뢰자
 - ② 공무원이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증뢰자
교부자 이름 예금후 찾아가라고 함-증뢰자
 - ③ **甲이 1억 증뢰, 乙은 3천소비, (자신을 위하여)**
7천을 丙에게 증뢰 (乙-1억추징, 丙-7천추징)
 - ④ **甲이 1억 증뢰, 乙은 3천소비, 甲의 취지대로**
7천을 丙에게 전달 (乙-3천추징, 丙-7천추징)
- cf [원칙] **각자**의 비용대로 계산하여 몰수·추징
 [예외] 불명이면 **평등** 분할하여 몰수·추징
 cf 공무원의 친구 비용은 공무원에게서 추징
 cf 뇌물을 약속한 경우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으면 몰수·추징○, 특정되지 않았으면×

- **공무원의 의도대로 제3자에 뇌물 준 경우**
제3자가 공무원의 가족, 사자,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받는 관계라면 **공무원은 단순수뢰죄 성립**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제3자뇌물공여죄 가능

ex **甲이** 시장 **乙**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乙의 동생 丙회사에 금전대출

→ (단순)수뢰후부정처사죄

- cf **甲이 구청장 乙의 내연녀 丙**에게 금원교부
甲이 군수 乙 위해 산악회 **丙**에게 수건전달
 → **단순수뢰×** (丙은 乙의 가족, 채권자× →동일성×)
 → **제3자뇌물제공×** (乙에게 부정한 청탁×) → **무죄**

□ 알선수뢰죄 (알선대가로 돈 받을때 기수)

- ① 상하·협동+사실 **영향**있는 공무원지위이용○
친구·친족 사적관계, 단순 공무원신분이용×
- ② **甲의 청탁취치를 乙이 丙**에게 그대로 전달○
甲을 대신하여 乙이 스스로 丙에게 청탁○
乙이 자기 대신 알선할 사람을 소개시킴○

□ 중뢰물전달죄 (전달명목으로 돈 받을때 기수)

- ① 뇌물로 전달할 돈을 임의로 소비-형령×
- ② 공무원이 전달하는 경우-제3자뇌물취득죄

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폭행, 협박 (방해의사×)

[직무사직강요]

공무원에 대하여 + 강요, 저지, 사퇴 목적으로 폭행, 협박 (직무집행중不要, 방해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방해의사○)

[특수공무방해]

단체, 다중의 위계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공무방해처사상]

단순공무방해처사상은 규정 없다.

[법정국회회의장모욕]

방해, 위협 목적 + 현장 또는 부근 + 모욕, 소동

-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인식으로 충분
위계-공집행: 위계+공무**방해** 인식까지 필요
- 위험한 공무는 방해하고 상해입혀도 무죄
☞ 공무집행방해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

ex 영장소지한 사복차림 경찰과 실랑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는 경찰을 상해-×
권리 고지 않고 파출소로 끌고가자 밍-×
싸움 끝난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상해-×
관리자 사전동의없이 불법체류자 단속-×

- 주차단속원이 딱지를 댄 직후-근무중○
감독관이 노사분규 동향파악하러 대기중-○
-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나 - 공집방 협박○
파출소에 인본 던짐 - 공집방 폭행○
택시 좌회전하여 의경 무릎받음 - 공집방○
음향으로 청각기관 직접자극 고통 - ○

cf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 소음 - ×
cf 면허증제시 불응하고 그대로 차를 출발-×
cf 임의동행요구에 죽어버리겠다고 말함-×

□ 공집방의 죄수 (판례는 공무원수 기준)

ex 동일공무 수행중인 수인 공무원을 폭행
→ 수개 공집방의 상상경합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시험장에서 쪽지전달, 시험문제 사전입수하여 응시, 입학원서 허위 기재, 허위수료증명서로 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 등 시험관련 - ○

- * 어업허가 현장심사없이 결재-○
- * 타인혈액으로 음주운전감정하게 함-○
- * 질병 노숙자의 진단서로 택시면허 양도-○
cf 허위경력증으로 개인택시면허 발급받음-×

* 변호사 집견시 수형자가 휴대폰 이용케 함-○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서 결론 잘못되면 무죄
충분한 심사했어도 결론 잘못되면 위계-공집방○

cf 구치소 수용자가 물래 담배피우고 **핸폰사용-×**

- * 허위 호구부 제출하여 사증 등록증 발급-○
- * 기준일 이전 등록증 제출하여 사찰존치-○

cf 허위학력으로 운전면허 구술시험 응시-×
cf 입찰공무원에 서류 제출전 무효임을 통보함×
(위계에 의한 공무원의 처분이 없는 **미수는 불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봉인, 압류, 강제처분표시를 손상, 은닉, 효용침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침해

[공용서류등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특수매체기록
손상, 은닉, 효용침해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자동차× → 공용서류등무효죄로 분류)

[공무상보관물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강제집행중+손괴)

납편에 대한 출입금지 가져분명령, **처에게**-×
 미하사 공사중지가처분,乙회사로 **명의 변경**-×
 압류표시 원동기를 **관리자**원에서 가동함-×
 가져분결정문이 **없어진** 상태에서 위반행위-×
 출입금지가처분받고 **채권자의 허락**받아 출입-×
 강제처분이 **완결**후-× (강제집행 중에만 可)
무효인 강제처분표시를 손상하면-×
 유효 강제처분표시는 그 결정이 **부당**해도-○
 비옥돈 kg별 **3단계** 구분하여 가압류-유효○
 채무 **변제**했어도 압류 해제되지 않았다면-○
 압류집행 표시한 TV 다른 여관으로 **옮김**-○
 가져분증인 카폐를 **무상사용**하도록 제공-○
 압류된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훼손**시킴-○

□ 부동산강제집행침해죄 (강제집행후+손괴/추침)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지상주차장을 침입-○
 채권자에 인도된 건물 출입문 판자를 뜯어냄-○

□ 공용서류·물건무효 (공무사용서류·물건+손괴)

군청에 보관중이 사인명의 건축허가신청서-○
사립대학에서 보관중인 공문서-공용서류×
 경찰 **스스로** 넘겨준 자신의 진술서를 찢음-×
 미완성 진술서를 순경에게 **간청**하여 가져옴-○
 계사건축허가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 **폐쇄**-○
경찰이 실황조사서 내용변경후 결재받으려 제출×
 (상관의 결재를 받는 단계까지는 삭제 **권한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무효**×)
 특허청 **직원**이 작성한 심결문이 필요없이 파기×
 (작성 **권한 있는** 자의 파기이므로 **공용서류무효**×)

도주·범인은닉

미수처벌	도 주	위 증	무 고	자수특례
친족특례	범인은닉	증거인멸		
		모해가중		

□ 미수처벌-도주 □ 친족특례-범인은닉, 증거인멸
 □ 모해가중-위증, 증거인멸 □ 자수특례-위증, 무고

【도주】

법률에 의하여 체포, 구금된 자

【특수도주】

수용설비 기구를 손괴, 사람에게 폭행, 협박
 2인 이상이 합동

- 도주주체: 수형자, 미결구금자, 소년원수용자
 구인된증인×, 가석방,보석증인자×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증인자×,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자×
- 도주하는 도중에 도와주면-도주원조죄
 도주 **성공**한 자를 도와주면-범인도피죄
- 자기를 도피-×, 자신 위한 범인도피교사-○
 자기증거인멸-×, 자신 위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자기위증-×, 자신 위한 위증교사-○
 cf **증인**이 증언거부권 포기하고 허위진술-위증○
- 형이 친동생을 이용하여 자신을 도피시킴
 → 형(범인도피교사죄), 동생(책임조각되어 무죄)
- 범인도피-도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하게 함×
- 경찰이 범인을 도피시킴-○ (직무유기×)
 甲이 범죄후 **공동정범**인 乙을 도피시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여 수사받음-○
 타인의 운전사고를 자신이 냈다고 진술-○
 피의자를 상피고인과 연락해 만나게 해줌-○
 조사받는 부하에게 다른 공범 숨기라고 함-○
 기초증지된자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줌-○

- 기소증지 모른채 신원보증인란에 허위기재-×
 목격자에게 **범인아니라고** 진술케 함-×
 (허위진술만으로 범인도피죄×, 위계-공무방해×)
 범인 아닐지도 모르는데 **범인이라고** 지목-×
 피고인이 공범인 상피고인의 이름을 **묵비**-×
 범인에게 “열심히 살고 건강해라”고 말함-×
 미국 도주범에 송금할 돈을 가명예금-×(예비)
 □ 범인은닉, 증거인멸 - 친족특별규정(판례)
 ① **법률상** 친족○, **사실상** 친족×, ② **책임** 조각

위증·증거인멸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 가처분사건 **변론**절차에서 선서하고 위증-○
 가처분사건 **실론**절차에서 선서하고 위증-×
 □ 참고인, 증인,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증인○
 cf **피고인, 당사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증인×
 □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않고 위증-위증○
 But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 검사 앞에서 선서한 경우-증인×
 □ 증언-허위사실진술○, 범죄평가, 단순의견×
 한번 선서하고 수회 허위진술후 반복-×
 □ 2-4차 허위감정 후 5차에서 사실부합 정정
 (허위감정죄 포괄일죄○, 정정했어도 이미 기수)
 □ 범죄단체 두목이 범죄를 지시한후 목격자를
 경찰에 출석못하게 함-범인도피×, 증인도피×
 □ 위증죄, 무고죄의 자수 등 혜택
 재판, 징계처분 확정전 : 자수, 자백 : 필요감면
 재판, 징계처분 확정후 : 자수 : 임의감면

무 고

- 수사기관 + 대통령, 도지사, 감사원장,
 국세청장에 신고해도-○
 □ 공동무고(타인에 대한 부분), **승낙**무고-○
부작위무고, **자기**무고, **사자**-허위무고-×
 □ 검사의 **주문**에 대한 대답으로 허위진술-×
고소보충조서 받을때 자진하여 허위고소-○
 □ 고소기간 도과가 신고내용으로 분명-×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수사권 발동 촉구할 정도○ (구체적 명시不要)
 □ 무고죄의 고의 (**마필적 고의**)○
 진실하다는 확실없는 신고○ (허위확신不要)
 □ 무고죄의 증명 (**적극적 증명**)○
 허위라는 적극증명○ (진실아니라는 소극증명×)
 □ **위법성조각사유** 알면서, 확실없는 사실,
재판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음, 시비를 가려달라,
 무조건 자신주장이 옳다는 생각,
 1개 고소중 일부만 허위 - 무고죄○
 □ 도박자금으로 대어한 금전**용도**를 허위신고-○
 cf (도박자금으로 대어한 사정을 숨기고)
 변제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신고-×
 cf 임차인 요청으로 계약서 명의가 변경-×
 몸싸움하고 구타당했다고 고소장 접수-×
 □ 경찰관에게 **제출**시 기수 (이후 반환받아도 ○)

인식	결과	위증(주관설)	무고(객관설)
진실	진실	무죄	무죄
진실	허위	무죄(진실인식)	무죄(고의×)
허위	진실	유죄 (허위인식)	무죄(진실결과)
허위	허위	유죄	유죄

- 인식과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과실범이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면 무죄인 것이 원칙이다.
 ∴ 객관설이 형법의 원칙이고, 주관설은 예외